# Ⅱ. 유 학

- 1. 유학사상의 정립
- 2. 유학사상의 발전
- 3. 유학사상의 실천적 전개

## Ⅱ. 유 학

## 1. 유학사상의 정립

성종 때에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國子監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미 태조 때에 開京에는 학교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태조 때에 西京에 학교를 설치한 사례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 때 개경에 세운 학교는 신라시대 國學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순한 신라의 지식인들, 특히 6두품계의 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새 왕조고려의 유학 교육기관이 개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칭도 신라의 국학을 답습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당시의 교과내용도 역시 신라 국학의 교과를 그대로 채용하였을 것이다. 신라 국학의 교과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禮記》・《周易》・《尚書》・《左傳》・《毛詩》・《論語》・《孝經》등의 경서와《文選》이 주가 되고 算學・三史・諸子百家書가 부가되었다. 이것은 원시유학의 근본이 되는 仁・義・孝・悌・忠・信이 기본을 이루고, 다음은한대부터 내려오던 5경이 전공과목이었으며, 그 밖에 문장을 익히는 대표서인 《문선》이나 역사서가 교양과목으로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광종 9년에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製述業에서는 試·賦·策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으며 明經業에서는 易·書·詩·春秋 등의 경전이 試題로 채택된 것을 보면, 신라시대 국학의 교과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뒤 성종 11년 국자감의 창건으로 고려의 유학 교육은 새로운 기원을 맞이하였다. 이 때의 국자감 창건은 종래의 국학이 국자감으로서 발전적으로 개편된 것이라 추측된다. 그런데 국자감의 교과내용을 보면 經學 분야로는

<sup>1)</sup> 金忠烈, 《高麗儒學史》(高麗大出版部, 1984), 55\.

《周易》・《尚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博》・《公羊傳》・《穀梁傳》・《孝經》・《論語》등이었다. 신라의 국학에서 볼 수 없는《주례》・《춘추공양전》・《곡량전》등이 들어 있으며, 그 밖에 時務策・書・《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등 새로운 실용적인 교과목이 추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자감의 창설과 함께 종래 국학의 교육내용에서 더욱 확충된 교육이 운영되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시험에 있어 고시과목도변화를 가져왔다. 즉 광종 이후에 달라진 과목을 보면 제술업에 있어서 禮經과 經義라고 하여 새로이 경학이 더 부과되었으며, 명경업에 있어서는《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의 5경만이 고시과목으로 설정되고있다.

물론 이 밖에 醫卜, 地理, 律書, 算學, 三禮(禮記·周禮·儀禮), 三傳(春秋左傳·公羊傳·穀梁傳) 등의 雜業이 추가되어 고려사회에 필요한 실무적인 분야와 이에 따른 시험과목이 정비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지방의 유학교육을 위하여 이미 성종 때부터 鄉校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적어도 인종대에 향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성종 때에 12주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향교 교육에 있어 경학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 지방의 향교 교육의 보편화를 꾀하였으리라는 사실 이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짐작할 수 없다.

위에서 고려시대 초기의 유학의 전개과정을 주로 교육제도상에 있어서의 교과내용과 과거시험에 있어서 시험과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유교의 학문적, 사회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논어》나《효경》 등은 계속 교육과 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존속되었으며, 경전교육에 있어서는 종래의 《춘추좌전》에서 《공양전》이나《곡량전》등이 더 확충되고 있어 《춘추》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주례》·《의례》·《예기》의 3례가 중요시되었음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제도와 문물을 중국식으르 정비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진전되었는데, 이 시기에 있어 특히 《공양전》이나《곡량전》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은 새 국가체제 정비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3례의 문제는 당시 중국의 새로운 유교적 禮制秩序의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高麗史》禮志의 방대한 禮制 내용을 보면 고려는 중국적 제국질서와 맞먹는 예 구조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제를 구축 정비하기 위하여 관리 등용에 있어 3례의 실천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보인다.

〈李熙德〉

### 2. 유학사상의 발전

고려 문종대는 고려 유학사상 새로운 활력을 일으킨 시기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崔冲에 의한 私學의 설립과 이에 뒤따른 이른바 私學徒의 출현이다. 그 동안 국자감 등에 의한 官學 중심의 유학교육에 더하여 사학이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1)

최충의 유학교육은 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大和·待聘의 9齋로 편성한 전문강좌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의 교과과정을 보면 9經과 3史를 중심으로 詩賦와 詞章을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9경이란《주역》·《상서》·《모시》·《예기》·《주례》·《의례》·《춘추좌전》·《공양전》·《곡량전》이며, 3사란《사기》·《한서》·《후한서》를 말한다. 논자에 따라서는《의례》대신《효경》을 드는 경우도 있다.

최충이 관직을 떠난 문종 9년을 기점으로 하여 설립된 私學 12徒에 의한 유학교육은 그 설립자나 교사가 과거의 고시관을 거친 知貢擧 출신이며, 동 시에 대부분 과거출신으로 추정된다. 이리하여 사학은 당시 과거를 위한 효 율적인 교육기관으로 등장하여 관학인 국자감보다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그런데 사학에서 가르친 교과목을 보면 종래의 국자감의 교과나 별로 다

<sup>1)</sup> 본장은 金忠烈,《高麗儒學史》(高麗大出版部, 1984) 및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편,《崔冲研究論叢》(1984) 가운데 尹絲淳,〈朱子學以前의 性理學導入問題〉와 李乙浩,〈韓國儒學史上 崔冲의 位置〉등을 참고하였다.

른 점이 없다. 다만 교육방법 내지 교수방법에 있어서 매우 능률적인 교육이 이루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 중기의 사학 교육에서, 특히 崔公徒의 9재의 이름 18자 가운데 聖(악성)·中(대중)·誠(성명)·敬(경업)·道(조도)·性(솔성)·德(진덕)·和(태화)·禮(대빙) 등 9자는 《中庸》의 根本義를 뽑아낸 것으로서, 최충이 지향한 학문의 방향은 오로지 철두철미 《중용》에 근거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9경 3사에 앞서 《중용》의 대의를 천명함으로써 유가의 윤리적 인간학을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것이나2) 9경 중심의 교육이 治國之術로서의 經史교육이라면, 최충의 9재교육은 治國之道로서 경사를 체득하고 실천하게 했다는 점에서 새로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9재의 명칭에 대한이해를 성리학에 기초한 中庸・大學 중시 경향과 연관지어 주자학 이전의성리학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성리학적 사색은 중국의 이 분야 학문별로 큰 시차 없이 거의함께 발맞추어 전개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3) 따라서 우리나라 성리학은 주자학 이전의 북송 성리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학 12도의 번영은 예종과 인종에 의한 관학진홍책으로 대응되었다. 예종 4년의 7齋는 周易·尚書·毛詩·周禮·戴禮·春秋·武學齋로서 무학재 외에 6재는 모두 경서를 교육하였으며, 여기서는 戴禮가 새로이 강좌과목으로 설 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타 과목들은 전통적인 경전 교과인 것이다.

다시 인종 때에 와서 京師 6學이 정비되었다. 경사 6학의 교육은 신분에 따른 교육제도상의 구분으로서 그 교과내용은 종전의 국자감 교육과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종에서 인종대에 이르기까지 중흥기를 맞이한 고려유학은 다시 宮廷講經으로 그 열기를 더하게 되었다.

궁정강경은 예종 11년 궁중에 淸讌閣을 짓고 學士들로 하여금 경서를 강론하게 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그러나 곧 다시 寶文閣을 세워 궁중 강학의

<sup>2)</sup> 李乙浩, 위의 글, 278~282쪽.

<sup>3)</sup> 尹絲淳, 앞의 글, 163~166쪽.

중심으로 삼았다. 사실상 궁중강경의 시작은 예종 11년 당시 知制誥 崔爚의 상서가 큰 계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는 당 문종이 재상의 말을 들어 감성에 흐르기 쉬운 詩學士를 멀리 하였다는 고사를 들어 제왕은 儒臣들의 經術을 통하여 化民成俗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종에게 간언한 바 있었고, 그 뒤 얼마되지 않아 청연각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연각을 세우기 이전에 궁중의 강경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예종 원년부터 의종 16년까지 60여 년간 궁중에서 이루어진 강경의 횟수가 49회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 때에 시·서·예·역을 강론하였는데 《서경》이 22회,《예기》가 11회,《주역》9회,《시》5회,《老子》1회,《唐鑑》이 1회로 되어 있다.

《서경》을 편목별로 보면 洪範이 6회, 說命이 6회, 無逸이 4회, 舜典과 大 禹謨가 2회, 堯典·皇陶謨·益稷·太甲 등이 각각 1회이다.

《예기》에 대한 강론은 《중용》이 4회, 〈月令〉이 6회, 기타가 3회로 되어 있다. 《중용》은 心性과 誠明을 깊이 있게 다룬 책으로 유교의 도의를 체득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수용되기에 앞서 이미 《중용》이 4서 중에서 특히 중요시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즉 경학을 존중하는 당시의 학풍은 이미 유학을 철학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생각되는 것이다. 동시에 《중용》 강론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최충의 9재교육에서 윤리학이나 인간학을 강조하여 치국의 도로서 지향하였던 학풍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주역》 강의도 매우 열기를 띠어 文言·繫辭에 대한 것보다 本經의 卦辭를 주로 하였으므로, 의리에 대해서는 크게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시》에 대한 강의는 金富佾이 거의 도맡아 하였다. 이것은 인종 이후에 시작되고 있어, 이 때부터 학풍이 전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의에 참여한 학자는 朴景仁, 高先柔, 池昌治, 朴昇中, 金緣(仁存), 胡宗旦, 洪灌, 金富佾·金富軾·金富轍 3형제, 韓安仁, 李永, 鄭克 永, 林存, 鄭沆, 鄭知常, 尹彦頤, 鄭襲明 등 20여 명이다.

예종·인종·의종 3대 60여 년에 걸쳐 성행하였던 尊經講學의 학풍은 당시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고,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성과를 저술로서 남기게

하였다. 즉 김부식의 《三國史記》, 윤언이의 《易解》, 崔允儀의 《古今詳定禮》, 김인존의 《論語新義》 등이 저술되었다. 그러나 《삼국사기》 외에는 전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의 면목을 잘 알 수 없다.

이 시기에 유학이 극성기를 이루었음은, 史臣이 예종을 평가한 ■文에도 잘 드러난다. 즉 왕은 타고난 자질이 명철하고 勵精求治했으며, 학교를 개설하여 선비를 길러내고 淸讌・寶文 두 文閣을 세워 날마다 문신들과 6경을 강론하여 예악적인 풍속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예종・인종 양대는 유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했던 학술사상 빛나는 시기였다. 그런데예종대의 崇經的 학풍은 인종대에 와서 詞章風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의종대에 가서는 너무 문약으로 흐르게 되어 마침내 무신을 경멸하는 풍조를 자아내었다.

고려 중기 유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예종·인종 양대에 걸쳐《서경》,《예기》,《역》,《시》가 가장 중요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시된 것은 《서경》과《예기》로 생각된다. 이들 두 경전의 강론이 단연 많은 강경횟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랫 동안 학교 교과목으로 중요시되어 오던 《춘추》에 대해 궁중강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5경 가운데《서경》과《예기》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동시대의국가·사회적 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강의를 행한《서경》의 경우 홍범이 6회, 열명이 6회, 무일이 4회로 으뜸을 이루고 있다. 홍범이란 殷의 賢者인 箕子가 周 武王의 요청에 따라 전해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원칙인데,《서경》에서도 王道를 설정한 가장 중요한 편목이라 할수 있다. 즉 王者는 천명을 받아 이를 정치에 구현하는 존재로서, 무릇 천과 인민 사이에서 天道를 실천하여 인민들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할 의무를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치자인 天子가 천명을 어기고 인민의 복리를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天意가 자연현상의 여러 가지 災異로 나타나,天譴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서경》의 홍범은「君主天命說」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홍범이 당시에 중요시되었던 것은 고려의 정치이념과 깊은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

고《서경》의 說命篇은 傳說이라는 재상이 등용될 때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盤庚으로부터 3대 후에 高宗이 즉위하였는데, 그는 뛰어난 천자였다. 그는 즉위한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런 새로운 시책을 펴지 않았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왕이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고 염려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심사숙고한 끝에 자기의 계획을 잘 세우고 부열이라는 현인을 재상으로 삼았는데, 이 부열의 보필에 의해 나라가 크게 번창하였으므로 은나라 중홍의 명군이라 일컫게 되었다. 이 부열을 기용한 때의전말을 쓴 것이 이 〈열명〉편이다.4〉 따라서 〈열명〉편은 치자가 현자를 기용하여 나라를 번창하게 발전시켜 名君이라는 청송을 받게 되는 방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군주와 이를 보필하는 신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요지로서 이해할 수 있다. 고려 중기 유교사상에서 추구하는 정치이념이 군신의 협력하에서 이상적인 정치가 성취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이상을 추구하려 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다.

다음에 중요시된 것은《예기》이다.《예기》가운데 가장 많은 강론이 이루어진〈月令〉편은 어떠한 것인가.〈월령〉은 춘하추동을 다시 孟·仲·季의 3 단계로 나누어, 달에 따라 태양의 위치, 昏旦의 中星, 그 달에 배당할 帝·神·虫·音·律·數·味·息·祀祭 등을 기록하고 계절을 맞이하는 방법, 각달에 내려야 할 政令을 기술하고 있다. 또 월령을 위배하였을 때에 닥칠 재해에 이르기까지 기술하고 있다.〈월령〉이 또한 치자의 중요한 관심거리가된 것은 역시 유교정치이념과 직결되기 때문이라 보인다.〈월령〉편에는 군주의 연중 행동방향 즉 정치와 그의 일상생활의 자세한 행동규범이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그 달의 월령을 그 달에 행하지 않고 다른 달로 넘긴다면 天體에 의한 재이를 초래한다는 5행설적 천명설이 또한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군주는 결국 천명의 실현자이다. 그러므로 천명에 따른 政令에 비추어일상생활을 영위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동시에〈월령〉편에 보이는 천자의 존재는《서경》홍범에 실린 五行・五事・庶徵・咎徵說과 함께 王道論의 구체적 실상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기》의 〈월령〉과 함께 이 시기부터 《중용》이 점차 당시 치자들의 지적

<sup>4)</sup> 金冠植 역,《書經》(玄岩社, 1967), 236~255\.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 뒤 고려시대 성리학의 수용 이전에 이미 고려 지성계가 심성과 성명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유학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효경》이 신라 이래로 중요한 교과목으로서 고려시대에도 계속된점이다. 《효경》은 이미 중국에서 戰國 말기 이전에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유가의 효사상을 담은 핵심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효경》은 명경업이나 제술업의 과거 시험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 때의 國子監學式에는 《논어》와 함께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최충의 9재의 교과목 중 9경 속에 《효경》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효경》에는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이라는 구절이 있다. 효가 충으로 이행한다 하여 효는 단순히 가족윤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마침내 군주에 대한 충이라는 정치윤리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사상은 유교국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사상으로 자리잡아 법률・예제 등 사회질서 속에 실천윤리로서 구현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초기 이래 유학은 5경을 중심으로 교육과 과거에 적용되어 왔으며, 중기 이후에도 고려의 유학사상은 그 주류가 5경 내지는 9경이라 하여 經學이 계속 중요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도록 이러한 유교 경전 가운데서도 특히 《서경》과 《예기》가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서경》과 《예기》가 중요시되었던 원인으로서는 당대 유교정치윤리의 정립과 구현이라고 하는 정치이념상의 과제가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서경》에는 유교이념에 따른치자의 왕도론이 시종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기》에는 유교정치 하의 군주들이 실천하여야 할 행동규범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왕자의 행동 실천에 있어 중요한 규범이 되는 경전인 것이다.

한편《효경》도 신라 이래 중요한 교과내용으로 전승되어 고려시대에도 국 자감학식이나 9재 교과에서 교과내용으로 편성되어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지 고 있었다. 그것은 효가 충으로 이행한다는 《효경》의 사상이 더욱 중요한 뜻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초기・중기까지의 유교사상의 정립・발전과정을 살

퍼볼 때, 이것이 당대 정치이넘으로서 또한 정치규범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함으로써 구체적・실천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사상은 고려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추상적인 학문적 대상만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 시대를 영위하는 지배적인 원리로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려 전기 유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이 시기 유학 사상의 전개과정을 천착하는 작업은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구체적인 원리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실천적으로는 예나 법의 내면적 구조 속에서 파해쳐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려 전기 유학의 실천적 구조와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구조화되었던 천문・5행사상과 효사상의전개 그리고 《고려사》예지에 수록된 5례의 의미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삼펴보아야 할 것이다.

〈李熙德〉

## 3. 유학사상의 실천적 전개

고려 전기 유학의 특징은, 그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국자감이나 사학의 경우를 막론하고 과거시험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비록 사학의 9재나 국학의 7재, 그리고 궁중 강학 등에서 보다 수준 높은 학문적활동이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당시 고려의 정치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적인 성격이 지배적이었으며 학문적 이론추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최충의 9재에서 《중용》이나 《논어》 등 후대에 중시된 4서가 교과목에 포함됨으로써 당시 중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방불케 한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뚜렷한 이론적 결실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려 전기의 유학은 아무래도 그 실천적 전개과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고 보인다. 그 하나는 유교정치 이념의 바탕을 이루는 天命說의 전개이며, 구체적으로는 「天人合一設」의 정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유교정치 이념의 핵심은 도덕주의 정치의 실현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도

덕의 원천을 「天」에 두고 「天命」에 의한 도덕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치자의 당위로 되어 있었다. 만일에 군주가 천명을 거스르고 도덕정치를 구현하지 않을 때에는 천견에 의한 제재가 자연현상이나 천문을 통하여 가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치자는 끊임없이 도덕정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천의의소재를 자연현상을 통하여 파악하여야만 한다. 咎徵・瑞祥 등 자연현상을 통하여 드러내는 천의의소재에 맞추어, 치자가「責己修省」하는 태도로 政事에임할 때에 왕실은 그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의 근원은 《서경》의 홍범편에 있는데, 이러한 정치사상이 고려사회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장의 과제의 하나이다. 동시에 천의의 조절자로서의 고려의 군주가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려사회에서 유교정치사상이 실천적으로 펼쳐짐에 따라 효와 예의 문제가 어떻게 규범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효란, 공자가 '仁의 근본이 孝에 있다'고 할 만큼 유가사상에 있어서 중핵을 이루며 그 중요한 이론적 근거는 《효경》에 있다. 효란 父祖에 대한 자손의 윤리 규범이며, 효가 충으로 발전 확대되어 간다고 하므로 결국 가족윤리로부터 군주에 대한 윤리규범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효란 가부장제적 윤리사상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효사상은 고려시대의 법과 禮制에 중요한근간으로 자리잡고 동시대 정치윤리의 실천적 기능으로 정립되고 있다. 그러나 효의 보다 중요한 정치사상적 의미는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고 한 점에 있다. 곧 효는 천지의 도와 민의 도 즉 人道와 일체화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효의 초월적 실제를 파악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한편 예에 있어서 5례란 국가와 왕실의 권위를 의례를 통하여 정립하기 위한 규범이다. 아울러 5례를 통한 고려왕실의 권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그 초월적 실재를 유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례의 이론적 근거는 《周禮》《儀禮》《禮記》등 3예서와 함께 《효경》에 있겠으나 당·송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절히 융합하여 규범화하고 있다. 5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 1) 오행설과 천인합일설

#### (1) 오행설과 정치

《高麗史》五行志의 서문을 보면 오행지를 편찬한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는 五運 즉 제왕의 자리를 부여하는 5행의 운행이 있으며, 땅에는 五材 즉 金·木·水·火·土가 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五性 즉 喜·怒·欲·懼·憂의 性情을 갖추며, 이것이 五事 즉 貌·言·視·聽·思로서 나타난다. 이것을 잘 닦으면 길하고 닦지 않으면 흉한데, 길이란 休徵이 응하는 바이며, 흉이란 咎徵이 응하는 바이다. 일찍이 箕子가 洪範九疇 즉 5行·5事·8政·5紀 등 9章의 大法을 펴서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데 힘쓴 이래로, 공자는 《춘추》를 지어 災異를 반드시 기록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사료로 전하는 재앙과 상서의 기록에 의거하여 오행지를 작성한다고 《고려사》의 찬자는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고려사》 찬자의 견해이지만 오행설의 내용이기도 하다.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행사상의 기조를 이루는 경전이 《서경》이며 그 중에도 홍범편의「五行」・「五事」・「庶徵」・「休徵」・「咎徵」등이라 하겠다. 즉 5 행에서는 수・화・목・금・토의 그 기본적인 속성인 水潤下・火炎上・木曲直・金從革・土爰稼穡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庶徵에서는 자연현상에 선과악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휴징과 구징에서는 서징에 이어길・흉이 천지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보다 직접적인 사상적 근거는 伏生의《尙書大傳》의 한 편목을 이루는〈洪範五行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漢書》·《後漢書》의 五行志에 인용된〈홍범오행전〉에 의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서경》홍범편의「水潤下」에 관해〈오행전〉에서는 "종묘를 소홀하게 하고 신에게 빌지 않고, 제사를 폐하고 天時를 거스르면 水가

<sup>1)</sup> 李熙德, 〈五行說의 展開의 儒教政治思想〉(《高麗儒教政治思想의 研究》, 一潮 閣, 1984), 95~151\.

潤下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火炎上」에 관해서 오행전에서는 "법률을 버리고 공신을 축출하고 태자를 죽이고 첩으로서 처를 삼을 때에는 火가 炎上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木曲直」에 대해서〈오행전〉에는 "田獵하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酒食에 예법대로 힘쓰지 않고, 궁전의 출입에 절도가 없고, 백성들의 농사철을 뺏고 또 姦謀가 있을 때에는 木不曲直한다"고 하였다.「金從革」에 대해〈오행전〉에서는 "戰功을 좋아하고 백성을 얕보고 성곽을 장식하고 변경을 침범했을 때에 金不從革한다"고 하였다. 또「土爰稼穑」에 대하여〈오행전〉에서는 "궁실을 꾸미고, 內淫亂하여 친척을 범하고 부형을 모독하면 稼穑不成이 된다"고 하였다. 즉《서경》홍범편의 목・화・토・금・수의 5행 각각의 성질과 기능이 정상으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군주의 부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天人合一說」의 理法을 실례를 들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서경》의 홍범에서는 이와 같은 천인합일설의 이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데,〈홍범오행전〉에서 그 이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에「洪範 五事」즉 貌・言・視・聽・思心에 관해서 역시〈홍범오행전〉을 살펴보기로 한다.「貌之不恭」즉 용모가 공손하지 못한 것을 정숙하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한 咎徵으로는 狂이다. 그 罰은 장마의 계속, 그 극은 악이다. 어떤 때에는 복식의 妖가 나타나고 어떤 때에는 거북의 요사스러움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 닭의 화가 생기고, 어느 때는 하반신의 器官이 상반신에 생기는 기형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靑眚・靑祥이 나타난다. 이것은「金」이「木」에해를 끼치는 것이다.

「言之不從」즉 언어 사용이 불순한 것을 不父라 한다. 그 구징은 어지러움이고 그 벌은 가뭄이며, 그 극은 근심이다. 때로는 詩妖가 나타나고 介虫의 요사스러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개의 화가 나타나고, 어느 때에는 구설의 痾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白眚・白祥이 나타난다. 이것은 「木」이 「金」에 해를 끼친것이다.

「視之不明」즉 사물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것을 밝지 못하다고 한다. 그 구징은 느슨함이고 그 벌은 더위의 계속이며, 그 극은 병이다. 때로는 草妖 가 있고. 때로는 껍질없는 벌레의 요사함이 있고 때로는 양의 화가 생기고 때로는 눈병이 생기고, 때로는 赤眚·赤祥이 생긴다. 이것은「木」이「火』에 해를 끼친 것이다.

「聽之不聰」즉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을 不謀라 한다. 그 구정은 急이다. 그 벌은 추위의 계속이고 그 극은 궁핍이다. 어느 때는 鼓妖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물고기의 요사함이 일어나며 어느 때는 豕禍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귀의 병이, 어느 때는 黑眚・黑祥이 일어난다. 이것은「火」가「水」에 해를 끼친 것이다.

「思心不容(睿)」 즉 사려가 깊지 못함은 聖德이 되지 못한다. 그 구정은 암울함이다. 그 벌은 바람부는 것의 연속이다. 그 극은 凶短折 즉 요절이다. 어느 때는 脂肪(심장을 싸고 있는)과 夜의 妖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꽃의 요사함이 일고, 어느 때는 牛禍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心腹의 병이 생기고, 어느때는 黃眚・黃祥이 일어난다. 이것은「金」・「木」・「水」・「火」가「土」를 해친 깃이다.

이상과 같이《서경》홍범편의 五行・五事・休徵・庶徵・咎徵 등의 내용을 홍범 5행전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홍범 가운 데 휴징ㆍ구징의 사상이 瑞祥과 災異로 나타나는데, 재이란 천이 내린 天禍 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 특히 군주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천인합일사상에 의 한 것이다. 이 천일합일사상은 하늘과 인간 사이의 감응인 것이다. 재이를 자초한 군주는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천벌로서 재이와 천화가 내려 지는 한편 군주의 행위 여하에 의해서는 상으로서 서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이건 군주는 天과 감응하여 교통하게 된다. 하늘로부터 서상을 나 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노력할 수도 있으며, 그의 부덕한 행위로 인하여 재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군주는 하늘과 통하는 초 인간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경》 홍범의 구징과 〈홍범오 행전〉의 재이는 군주가 예를 지키지 않고 도를 행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군주로 하여금 예를 지키게 하고 도를 행하게끔 하고자 하는 하늘의 경고이다. 즉 군주에게 도를 설득하는 것이요. 군주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경우 군주를 향해서 신하가 직접 도를 설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 라 하늘의 권위를 빌어 이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하늘과 교접하고 하늘과 일체화한 초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군주를 비판하고 지도하는 것은 하늘 이외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홍범오 행전〉은 물론《상서》홍범의 경우에도 군주를 하늘에 연관된 초인간적 권위 의 소유자로 삼고 있는 것이다.<sup>2)</sup>

이상과 같은《서경》홍범의 사상과 복생의《尚書大傳》중의〈홍범오행전〉의 사상이《고려사》오행지에 전개되어 있는 것을 이미 그 서문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직접으로 동 5행지의 순서에 따라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이러한 천인합일사상의 수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려사》오행지의 순서에 따라 그 사상의 전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구징설과 천인합일설

「水」의 答徵에 대해 살펴보면, 물은 사물을 적시고 아래로 흐르므로 潤下라고 하여 물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것이 그 본성을 잃게 되면 災診가 되어 때로는 빗물이 넘쳐 百川이 거슬러 넘쳐서 향읍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물에 빠져 죽게 한다. 때로는 鼓妖 즉 북소리의 妖祥이 나타나고 때로는 豕禍가 있고, 수해와 雷電・霜雪・雨雹의 재이가 나타나는데 아울러 恒寒 즉 계속되는 추위현상이 발생하며, 그 색은 흑이고 이른바 5행의 水氣로부터 일어나는 재이인 黑眚・黑祥이 물이 윤하하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속한 고려시대의 사례를 보면 먼저 광종 12년(961) 4월 초하루에 바람이 크게 불고 뇌우가 쳐서 물이 街衢에 넘쳐 인가가 표몰하고 물이 변하여 붉게 되었다는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大水의 피해를 기록하고 익사자의 발생, 舟楫의 표류, 禾穀의 손상 등의 수재기록이 연속되어 있다. 大雨혹은 大水 외에 井鳴・水湧・海水나 池水의 變色・固渴・濁沸, 寒風・天寒・冰, 鍾鳴・天鼓鳴・天動・石鳴・天鳴・堂鳴, 虹・蛇・靑龍・黑龍, 魚死 및馬・猪의 多産과 奇形出産, 結草爲人・雷雨・霜・大雪・雨雹, 玄鶴, 黑霧・黑氣・坤鏡 등의 변이가 각각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水不潤下에서 빚어지는 위의 잡다한 재이 가운데 천인합일사상이 실제 고

<sup>2)</sup> 板野長八、〈尚書大傳〉(《中國古代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岩波書店, 1972), 36 3~367等.

려의 政事에 반영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고려사》오행지 1의 수재기사로서 인종 2년(1124) 7월에 대우와 뇌전이 쳐서 市道의 수심이 한 길이며 迎恩館과 德山房人을 진동시켰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高麗史節要》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李資謙이 상복을 벗고 관직에 나와 中書省에 앉으니 宰樞와 文武常叅級 이상은 뜰 위에, 7품 이하는 뜰 아래에 늘어서서 陳賀하는 禮를 행하였다. 이 날 큰비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심하여 거리와 한길이 물에 묻히고 벼락이 迎恩館을 쳤다. 8월에 이자겸이 셋째 딸을 왕에게 바쳤는데, 이자겸이 다른 姓이 妃로 들어 앉으면 권세와 은총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강청한 것이다. 왕이마지 못하여 그대로 따랐는데 이 날 소나기가 오고 센 바람에 나무가 뽑혔다(《高麗史節要》권 9, 인종 2년 7·8월).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종 2년 무렵은 이자겸이 인종을 옹립하고 그의 권모가 시작되던 때였다. 같은 달 7월에 이자겸은 朝鮮公으로 봉작되고 식읍 8,000호를 받았으며, 그의 생일을 仁壽節로 제정하였다. 이 해 7월과 8 월에 내린 대우, 천둥과 번개 등의 천재지변을 사납고 교만한 이자겸의 행동 과 결부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후한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和帝 永元 원년 8월 君國 아홉 곳에 大水와 傷稼가 있었다. …이 때에 和帝 는 어려 竇太后가 섭정을 하였다. 그의 오빠 竇憲이 幹事가 되고 憲의 여러 동생이 모두 고귀하게 되었는데 아울러 그 위세가 포악하여 일찍이 원한을 사게되었다.…(《後漢書》志 15, 五行 3).

여기에서 어린 和帝에 대한 섭정을 이용한 實后一家의 專政의 정조가 그해 7월의 군국 아홉 지방에 걸친 큰비로 드러났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서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사절요》에 보이는 이자겸의 행위와 이 두태후의 경우는 너무나 비슷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는 치자로서 「聽之不聰」의 부덕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행패에 대하여 하늘이 어찌 그 징험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천인합일설이며 또한 5행설의 사상인 것이다. 이 밖에 《고려사》 오행지의 큰물의 기사들이 당시로서는 이들과 유사한 원인에서거나 또 어떤 다른 원인에서 초래된 재이로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수불윤하의 사례로서 霜·雹·隕霜의 재이를 들어보겠다.《고려사》오행지의 관계 기사를 보면 선종 6년(1089) 4월 隕霜이 내려 太史가 상주하였는데 하늘이 재변을 내린 것은 반드시 백성의 원성으로 인한 것이라하고, 마땅히 하늘의 조화의 법에 따라 政敎의 득실을 살펴 형을 관대히 하고 죄를 사하여 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 이것을 嘉納하였는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선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취하였는지 기록이 없으나 그 해 9월 병진에 사형을 중단했다는 것이 4월 운상에 대한 처리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 숙종 원년(1096) 4월의 서리·우박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름 4월 임술 초하루에 서리가 내리고 계해에 또 서리와 우박이 내렸다. 계 유에 宣德殷에 거동하여 해가 기울어지기까지 聽朝하였다. 中書省이 아뢰기를 '만물이 성장할 때를 당하였는데 3월 이래로 時令이 어기어져서 물이 응결하여 얼음이 되고 서리가 내려 생물을 죽이고 밤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洪範五行 傳〉에 의하면 우박은 陰이 陽을 위협하는 象이라고 하였고. 〈京房易傳〉에 이르 기를 誅罰함이 理에 벗어나면 그 災로 서리가 내린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위에 있는 이가 어느 한쪽 말만 듣게되면 下情이 막히는 것이니 능히 이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가 嚴急한 데 있으면 그 벌은 常寒(장기 추위)이라고 하 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兵事를 일으켜 誅罰을 함부로 하면 이를 亡法이라 하는 것으로서 그 災로 서리가 내려 여름에 5곡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에 幼君이 병환으로 누워 聽斷함이 불명하고 모후가 섭정하여 沈惑함이 도를 잃어 흉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틈을 타서 난을 꾀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크 게 誅戮을 행하여 黨類를 남기지 않고 일에 정상을 밝히지 않았으니 감옥에 간 힌 자 중에는 반드시 무죄한 자가 있어서 怨氣가 천지에 가득하므로 和氣가 변 하여 재앙이 되었습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성상께서 천명에 응하여 대통을 이 으셨으니 萬機를 싸잡아 바르게 하소서. 비옵건대 御史臺와 尚書刑部로 하여금 무릇 疑獄에 시비가 미정한 것은 독촉하여 공정히 판결케 하여 寃枉함이 없게 하고, 그 고발한 바가 사실이 아닌 것은 모두 反坐케 하여 이로써 天戒에 답하 신다면 곧 인정이 서로 기뻐하여 灾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 이 이를 聽納하였다(《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원년 4월).

이 때의 재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政情을 살펴보면 나이 어린 헌종의 즉위 후 왕위를 둘러싸고 李資義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漢山候 盷과 왕의 숙부 鷄林公 熙(뒤의 肅宗)와의 대결에서 기선을 잡은 계림공이 승리하여 현종 원년 8월에 中書令이 되었고 10월에 이르러 헌종의 선양을 받아 즉위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원년 3월과 4월에 걸쳐 발생한 서리・우박 등의 재이는 이정변과 관련되어 풀이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때의 서리・우박은, 음이 양을 협박하는 象이라고 하는데, 전년에 있었던 이자의와 그 일파의 세력을 숙청하고 왕위를 획득한 숙종의 치세에 내린 것이었다. 이는 전년에 있었던 정변에 연계되어 투옥된 자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결함으로써 天戒에 답하라는 중서성의 상주에 대하여, 숙종은 이를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5월에「放輕繋」라 한 것으로 보아 恤刑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水不潤下에 속하는 재이에 관한 대수, 상박 등의 실례를 통하여 고려시대 천인합일사상의 실제를 엿보게 되었다. 더욱이〈홍범오행전〉이나〈경방역전〉 등이 구체적으로 인용된 사례도 있었다.

다음에는 오행지의 순서에 따라「火」에 관한 재이를 보기로 한다.《고려사》오행지 1, 오행 2에서는 불의 炎上을 불의 속성이라 하고, 그 속성을 상실하게 되면 재화가 되고 양의 失節로 화염이 함부로 발생하며 종묘와 궁관에 화재가 발생하고 때로는 草妖나 羊禍가, 혹은 羽虫의 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불의 不炎上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火不炎上」이면 그 咎徵은 恒燠 즉 긴 더위가 있고, 그 色은 赤眚・赤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고려사》오행지의 火炎上 조항의 머리글 내용은 앞서 인용한〈홍 범오행전〉의 내용과 거의 같다. 구체적인 화재의 기사로서 定宗 2년(947) 10월 서 경 重興寺 9층탑의 화재, 그리고 목종 12년(999) 정월 大府油庫 화재의 千秋殿 延燒, 그 밖에 많은 화재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천추전의 화재는 당시 목종의 모후 千秋太后가 섭정하면서 金致陽과 내통하여 왕정을 어지럽히 던 政情의 반영이며 특히 천추태후의 궁까지 화재가 연소된 것은 태후에 대한 天戒로 볼 수 있다.

恒燠에 대해서는 예종 16년(1121)의 無冰 기사, 겨울의 이상난동이 기록되어 있으며, 草妖에 관해서는 경종 6년(981)에 杜鵑花가 피었다는 것으로 시작되어 11월의 牧丹花開, 8월의 牧丹花再開, 8월의 梨再華, 9월의 薔薇華, 10월

의 桃李華, 10월의 葵花 등 계절에 맞지 않는 꽃의 개화가 기록되어 있어 고려시대 草妖의 실례를 보여준다. 羽虫의 孼에 관해서는 鵂鶹白日滿空飛鳴,野鶴數千盤飛 등의 기사가 있다. 그 밖에 명종 14년(1184) 6월에 西部 香川坊 민가에서 小雀이 山鵲 크기만한 새끼를 깠는데, 이 占에서 말하기를 '羽虫之孼에 속하는데, 같지 않은 기형을 낳은 것은 국가요란의 징조'라고 설명하였다. 명종 14년 6월은 왕이 李義旼을 소환하여 기용한 지 4개월 뒤이며 그 동안 이의민은 慶大升이 두려워 피신하다가 그의 병사 후에 부름을받았던 것이다. 그가 기용되었을 때에 왕은 그의 포악함을 두려워하여 겉으로 기쁜 듯이 위로하자 중외에서 모두 왕의 유약함을 애석히 여겼다고한다.

그리고 羊禍에 대한 것으로서 현종 9년(1018) 2월 京牧監에서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一首兩身 즉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기형을 출산한 기사가 있다. 그리고 赤眚・赤祥에 관해서 赤氣如火, 池水變爲血色, 水其色如血, 赤沸紅雲, 紫氣, 血祲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인종 8년(1130) 8월 을미의 초경에 赤氣가 火影같았는데 坎方으로부터 발하여 北斗魁中으로 덮어 들어가더니 起滅이 무상하였으며 3경에 이르러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日者가 아뢴 것을 보면, "〈天地瑞祥誌〉에 말하되 赤氣가 火影같이 나타나는 것은 신하가 그 君을 반하는 것이므로 바라옵건대 修德하여 변괴를 없게 하십시요"라는 것이었다.

이들 적기의 발생으로 예시되는 징조는 兵喪之災, 복병 등 병란에 관계되는 것과 臣叛其君, 下有叛民 등의 모반·반란의 징조, 그 밖에 賊人將貴나왕의 薨去 등의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징에 대한 消災의 방법으로서는 天祥祭·修德消變·大佛頂讀經·金剛明經法席 등이 베풀어졌다.

5행의 세번째는 「木」으로서, 木曲直에 대한 기사이다. 나무는 곡직 즉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이 그 본성인데, 그 본성을 잃으면 재이가 된다. 그러므로 생물이 暢茂하지 못하고 변괴가 되어 때로는 鷄禍가 있게 되고 때로는 鼠妖가 있게 된다. 이것은 목이 곡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징으로서는 恒雨가 발생하며, 그 색은 靑으로서 靑眚・靑祥이 된다고《고려사》

오행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재이로서는 僵槐自起, 僵梨自起, 枯木復生 등이다. 태조 22년 (939) 8월에 大內柳院의 僵槐 즉 쓰러진 홰나무가 스스로 일어섰다던가, 현종 7년(1016) 4월 司憲臺 마당에 있던 잣나무가 죽은 지 몇년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가 있다. 《당서》오행지에 보면「枯木復生」은 권신의 집권,「木仆自起」는 國之災라고 하는 등의 풀이가 가해져 있다. 《후한서》나《수서》등에는 龜擘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고려사》에서는 송충의 발생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송충에 관한 기사는 숙종 5년(1100)으로부터 공양왕 때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빈번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데 매우 고심하고 있음을 본다. 숙종 5년 平州 관내 白州 鬼山의 食松에 이어 이듬해에는 首押山에 송충이 침식하고 있다. 이 해 太史의 상주에 따라 송충의 식송은 병화가 일어날 조짐이라 하여, 灌頂・文豆婁・寶星 등의 도량을 설치하고 또 老君符法을 설치하여이를 祈禳하고 있다. 마침 이 해에는 가뭄이 심하여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그 이듬해 4월에는 군신이 上言하기에 이르렀다.

송층의 번식은 여러 가지 祈禳도 효과가 없으니, 생각하건대〈京房易飛候〉에는 '신하의 보필이 왕의 聖化에 도움이 되지 않아 天이 虫害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에 대해) 형언할 길이 없고 임금님께 근심을 끼쳤으므로, 원하건대 不肖者들을 물리치고 賢者를 기용함으로써 天譴에 대처하십시요(《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6년 4월 을사).

그 뒤에도 송충 등의 충해가 거듭되어 인종 11년(1133) 5월에 이에 대한왕의 장문 조서가 있었다. 즉 蝗虫이나 송충의 재이는 군주의 부덕은 물론부덕한 신하의 不黜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敎化遷善과 長惡不悛者에 대한공평하고 철저한 제재, 그리고 淸白奉公 節義殊異者에 대한 포상과 천거 등당면한 정치현실에 대한 반성과 선후책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인종 11년은 이자겸의 난 이후 다시 妙淸 일파의 서경 정치세력이 개경의중앙정계와 심각한 권력투쟁을 진행하고 있을 즈음이다. 따라서 이 조서에보이는 「不黜無德」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庸人鄙夫 濫進列位'란또한 누구인지, 실로 당시 정정을 둘러싼 복잡한 내용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뒤 명종 2년 7월에 궁궐에 화재를 입고 송충이 소나무를 침식하고 천문현상에 있어서도 변고가 있자, 명종은 조서를 내려 몸소 자책 하고 내외의 斬絞 이하의 죄인을 특사하기도 하였다.

다음 鷄禍의 예를 보면 태조 15년 4월에 서경민 張堅의 집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태조는 다음달 5월에 계화와 더불어 대풍까지 겹치자 일련의 유시를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은 서경을 앞으로 수도로 삼기 위해서 도시를 보수하고 인구를 채우고 있는 터에 불길한 재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것이나 대풍에 의한 재이의 발생은, 간사한 신하가 異謀를 품는 등 분수를 넘는 욕심을 품을 때에 천견으로서 드리워지는 것으로서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木不曲直」에 속한 변이로서 木稼・木冰・霖雨・淫雨・木生異實・鼠妖・靑眚・靑祥 등의 기록이 있다. 이들 재이기록의 실제와 그 해석 및 조치에 나타나는 고려시대인의 관념을 살펴보면 중국의〈홍범오행전〉등에서 볼 수 있는 천인합일사상이 깊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5행의 네번째는「金」이다. 從革 즉 형태를 융통성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이 금의 속성이다. 이것이 그 본성을 상실하면 재이가 되어 治鑄가 이루어지지않고 변괴가 되기도 하며 訛言, 毛虫之孼, 犬禍가 생기고 그 징조는 恒暘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금이 不從革이 되는 원인으로는 앞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은데, 제왕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천하를 편안케 하는 것으로 그쳐야 금이 그 본성을 유지하게 된다. 만일에 침략과 전공을 즐겨서 백성들의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이 모두 불안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금이 不從革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관련된 재이로서는 木珍金, 常暘(旱), 蝗, 訛言과童謠, 詩妖, 毛虫之孼, 犬禍, 白眚・白祥 등이다. 이에 속하는 재이로서 가장중요한 것은 常暘 즉 가뭄이다. 가뭄이란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이이다. 특히 농정국가에서 가뭄은 생존을 좌우하는 실로 무서운 재난인 것이다. 한재에 대해서는 《고려사》오행지는 물론 《고려사》전편을 통하여 가장많고 또 소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고려사》오행지를 통하여 가뭄의 발생과 그것을 消災하려는 고려

인들의 노력이 참으로 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뭄의 원인은 「言之 不從」에 있다고 〈홍범오행전〉은 전하고 있다. 人君의 무도, 형법의 不一, 科 歛의 과중. 군사의 동원. 노역의 동원 등으로 임금이 衆望을 잃으면 정령을 따르지 않고 이로써 초래될 군주의 중형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하여 양기 가 성하게 되면 한재가 발생하여 그 벌이 곧 상양 즉 항양이란 것이다. 그러 므로 가뭄의 계속은 결국 군주의 부덕한 정사에 기인된다는 것이다. 고려시 대에 있어 가뭄을 소재한 실례를 보면 성종 10년(991) 7월에 내린 왕의 교서 에서 정치교화의 부족, 형벌과 포상의 불공평이 이러한 재이를 가져오게 하 였다 하고. 죄수를 석방하고. 왕 스스로는 호화스런 正殿을 피하여 정사를 집행하고 常膳을 감하며, 힘써 사원과 산천에 祈求와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 스스로 부덕한 소치로 가뭄이 계속되었 다. 이 때에 京城 서민 80세 이상 노인에게 양로의 예를 행하여 농사에 대한 왕의 근심을 표시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성종의 가뭄에 대한 조서는 군 주에 의한 자성과 자책으로서 유교정치사상의 전형을 이룬 것이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성종 이후 가뭄을 만나면 왕은 죄인을 사면하고 常膳을 줄이 거나 심지어 輟膳까지 하고 正殿을 피하여 자책하고 자성함으로서 천견에 보답하려는 의식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가뭄 퇴치를 위한 의식과 대책이 실시되었는데 토목ㆍ건축 등 공사의 혁파와 役 夫의 방면, 구빈 등 치자의 선정, 종묘 등에서 지내는 조상의 제사를 통한 기우, 그 밖에 도교 방식에 따른 祭齋, 자연숭배 또는 토속신앙적인 기우제 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교적인 각종 도량의 설치와 講經이었다. 결국 가뭄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행위는 고려시대인들의 모든 정신생활의 총화였다.

5행의 다섯째는「土」로서「稼穡不成」에 관한 것이다.《고려사》오행지에 토는 중앙에 자리잡아 만물을 생장시키고 稼穡에 있어서 막중한 위치에 있으 므로 토기가 길러주지 않으면 가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ㆍ목ㆍ수ㆍ화가 토에 災沴를 끼치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흙비가 내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夜妖가 발생하기도 하고 贏虫之孼이 있기도 하며 牛禍가 일어 난다. 그 구징은 恒風이요 그 색은 황색이다. 이것이 黃眚・黃祥이 된다.

稼穡의 不成 즉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량생산이 여의치 않아 기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려사》오행지에 실린 기근에 관한 기사는 靖宗 6년(1040)을 시작으로 하여 우왕 5년(1379)까지 걸쳐 있다. 이러한 기근사태는 〈홍범오행전〉에 의하면 군주가 토목공사를 남발하거나 음란 등 불륜행위로 해서 빚어지는 재해라고 한다. 土에 관한 재이로는 恒風, 大風, 常風,恒霧, 大霧, 夜妖, 地震, 山崩, 石裂, 贏虫(비늘・껍질・깃 등이 없는 虫)의 변이, 牛禍, 黃眚・黃祥 등인데 이 중에 몇 가지 실례를 들기로 한다. 먼저 다음은 인종 8년(1130) 6월과 7월의 暴風折木의 재이에 관해서 당시 太史가 상주한 것이다.

8년 6월 계미일 輔時(申時)에 폭풍이 불어 나무를 꺾고 모래를 날리며 우박이 내렸다. 太史가 아뢰기를 '근래에 陰陽을 臆說하는 자가 있어 임금에게 번갈아 소식을 올려 非禮의 齋醮를 행하니 비유컨대 약을 다 썼는데 병이 낮지 않는 것과 같사옵고 늙고 젊은 남녀가 자주 모여서 서로 佛號를 唱하오니 마땅히御史臺 및 街衢所에게 巡行하여 금지케 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이를 따랐다. 7월신해일에 폭풍이 불어 나무를 뽑았고, 천둥 번개치고 五正里 人家의 소나무를 벼락쳤다. 太史가 奏하기를 '立夏부터 立秋 후에 이르기까지 時令이 不調하여풍우가 暴作하고 혹은 우박이 내리니 이는 또한 水旱兵喪之災라 장래가 가히두렵사오며, 齋祭로 祈禳하여도 變을 제거할 수 없아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몸소 반성하고 덕을 닦으시어 위로 天譴에 답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高麗史》권 55, 志 9, 五行 3).

위에서 暴風拔木 등 일련의 재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소방법으로 군주의 반성과 수덕만이 천견에 답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恒霧·大霧에 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의종 18년(1164) 11월 무자일에 大霧가 끼었다. 계묘일에는 陰霧로 사방이 막혀 길가던 사람이 길을 잃었다. 태사가 상주하기를, '안개란 뭇 사특한 기운으로서 연일 풀리지 않으면 나라가 혼미하다고 합니다. 또 안개가 혼란하게 일어나 10보 밖의 사람이 보이지 않음을 晝昏이라 합니다. 대궐의 明堂은 조종이정사를 펴는 곳으로 그 제도는 모두 천지 음양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임금은 출입과 기거를 무상하게 하지 못하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그 있을 곳이아닌 곳에 처하고 그 인물이 아님에도 임용하시며 명당은 오래도록 비우고 거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천재는 가히 두려워할 것인데 修省하지 않으시고 移

徙가 무상하며 號令이 때가 없어, 이러한 이변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끝내 의종은 깨닫지 못하였다(《高麗史》권 55, 志 9, 五行 3).

결국 이 때에 연달아 일어난 안개 현상을 의종이 실정한 소치로 돌리고, 태사는 왕의 責己修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나. 상서설과 천인합일설

자연현상이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길흉화복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 악하고 있는 5행설은 자연현상에서 흉화를 나타내는 구징과 대비하여 또 한 편으로는 吉福을 나타내는 祥瑞가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서경》 홋 범편에 의하면 풍우ㆍ수한 등 자연계의 부조를 나타내는 구징에 대하여 이 러한 자연현상이 순조롭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庶徵이 있으나 이 것이 곧 상서로 해석되지는 않았다. 상서의 출현은 특이한 현상에서 이를 풀 이하고 있었다. 즉 당시 인류가 이상으로 하는 성군 명주에 의하 덕치의 실 현을 바라는데서 온 것이었다. 성군의 출현과 함께 상서가 수반된다는 상서 설의 기원은 멀리 전국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지만 奏을 거쳐 前漢 초기에 와 서야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史記》孟子荀卿傳에 있는 鄒衍의 설과《呂氏 春秋》名類篇의 기사로 미루어. 늦어도 전국 말기에는 왕실이 일어날 때나 聖天子가 출현하였을 때에는 상서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추측 된다.《荀子》哀公篇에는 정치가 삶을 사랑하고 죽임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면 봉황새가 줄지어 나무에 앉고 기린이 郊野에 노닌다고 하여. 仁君의 치 세에는 鳳麟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한대에 와서 晁錯・董 仲舒・公孫弘 등에 의해 상서설로 그 진면목을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시대 상서설의 수용 실태를 《고려사》오행지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 로 한다.

오행의 첫번째「水」에 속하는 상서로서 광종 9년(958) 5월에 玄鶴이 含德殿에 모여 있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날은 과거제가 설치된 뒤 崔暹 등에게 급제를 내리던 때이므로, 아마도 현학은 과거의 경사와 관련된 것이라 보인다.

다음 오행의 두번째 「火」에 속한 것으로서는 태조 원년(918) 6월에 一吉粲

能允의 家園에 瑞芝가 '一本九莖三秀'가 된 것을 왕에게 헌상하여 內倉穀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문종 16년(1062) 5월에 朱草가 重光殿에 叢生하여 왕은 詞臣에게 시를 짓도록 명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芝草와 朱草의 발생이 서상으로 파악되고 있음은 이미 기록으로 알 수 있거니와 주초에 관해서는 《宋書》符瑞志 下에서는 "王者慈仁則生"이라 하여 인자한 임금의 덕으로 해서 나타나는 상서로서 생각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초에 대해서는 역시 동 부서지 하에 "朱草 草之精也 世有聖人之德生"이라고 해서 성인의 덕이 나타날 때에 자란다고 하였다. 위의 두 瑞草가 하나는 고려 태조의 개국을 찬탄한 서상으로, 하나는 문종조의 덕치를 상징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행의 세번째「木」에 관한 것으로 木連理가 있다. 목의 연리란 두개의 다른 나무가 가지에서 서로 엉겨붙은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송서》 부서지 하에서는 "王者德澤純治 八方合爲一則生"이라 하여 왕자의 덕치가 純治하여 사방이 조화롭게 잘 통치될 때에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고려사》 오행지 2에 보면 광종과 성종대에 개성과 충주에서 각기 木連理 현상이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5행의「金」에 속한 상서로서, 白雉・白鵲・白獐・白雲・瑞氣 등이 보인다. 백치에 대해서는 《송서》 부서지에 周公 때에 백치와 상아를 바친 일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상적 군주의 출현을 표상한 것으로 보인다. 백장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부서지에 "白獐 王者刑罰理則至"라고 하듯이 刑政이 정상으로 구현될 때에 나타나는 서상이라고 보겠다.

다음 5행의「土」에 관한 서상으로서 瑞麥·瑞泰·嘉禾 등이 있다. 서맥에 대해서는 예종 때에 尚州에서 2건, 우왕 때 晋州에서 1건이 보고되었고, 《고려사》오행지의 끝에 보이는 성종 때의 "稻穗長七寸 忝穗長一尺四寸", 숙종때의 "稻一種再熟", 공민왕 때의 "金庾獻十節稻" 등이 가화에 속한 것이라 믿어진다. 가화란《송서》부서지에 "嘉禾五穀之長 王者盛德則二苗共秀"라 하였듯이 왕자의 성덕이 나타날 때의 표정인 것이다.

#### (2) 유교정치이념과 월령

고려시대에는 성종대에 접어들어 유교사상에 있어《예기》월령의 사상적 전개가 두드러져 가고 있었다.3) 《예기》는 고려 이전에도 5경의 하나로서 교과내용이나 관리채용 시험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사상적 전개과정은 자못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접 어들어 국자감의 설치나 과거제의 본격적인 정비와 함께《예기》는 5경 중 에서도 특히 《서경》과 함께 중요시되었다. 그리고 《예기》는 私學의 성립과 발전, 관학의 진흥과 더불어 궁정강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궁정 강학의 경우 《서경》 다음가는 비중을 보이고 있고 특히《예기》월령의 강좌 횟수가 다수를 나타내기도 한다.《예기》월령편 의 내용은 왕자로서 1년 열두 달의 시절 변화에 순응하여 지켜야 할 일상 의 생활규범과 정령을 규정한 연중행사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중국의 고 전적인 왕자의 행동규범이 성종조 이후 고려의 정치적 실제에 도입된 것은 아마도 崔承老의 封事 이후라고 믿어진다. 실제로 최승로는 그의 봉사에서 불교는 신앙의 영역이나 유교는 理國의 근본이 된다고 단정하고. 당시까지 관행되고 있었던 많은 불교행사를 줄이도록 하라고 강조하면서 월령에 의 해 정사와 공덕을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는 성종에게 바친 봉사 속에 《예기》월령 중 仲夏(5월)와 仲冬(11월)의 월령에 속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최승로는 이 월령 규범에 의해서 불교행사를 5월과 11월에는 피하되 1년을 4기로 구분하여 2·3·4월과 8·9·10월까지는 政事와 功德을 반반으로행하고 5·6·7·11·12·1월은 공덕을 피하고 오로지 정사를 닦아 날마다정사를 행하고 밤늦게까지 다스리기를 힘쓰되, 매일 오후에는 군자의 四時의예로써 영을 닦고 몸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곧 時유에 순응하고 聖體를 편안하게 하며 신민의 노고를 덜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sup>3)</sup> 李熙德, 〈高麗初期의 天文・五行說과 儒教政治思想〉(앞의 책), 39~60쪽.

이와 같이 최승로는 그의 봉사에서 성종으로 하여금 불교행사를 대신하여 유교적 생활규범을 권장하고 종래의 불교적인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의 실천으로 전화시키려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정월에 성종 은 籍田과 祈穀의 예를 시작하여 유교적 예제를 점차 화충시켜 갔다. 즉 성 종 2년(983) 정월 왕은 圓丘에서 기곡하였는데 태조를 여기에 배향하고 이어 서 친히 적전을 갈고 神農에 제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기곡의 의식 은 곡식의 성숙을 상제에게 비는 행사이다.《예기》월령의 孟春슈에는 "이달 에 천자는 元日, 즉 上辛日을 가려서 상제에게 곡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元辰을 택하여 천자가 친히 쟁기와 보습을 수레에 실어 참승(驂乘)한 거우 (車右)의 용사와 御者의 사이에 두고, 3공과 9경과 제후의 대부들을 거느리 고 가서 몸소 황제의 적전에서 밭갈이를 한다. 천자는 쟁기를 잡고 세 번 밀 며 3공은 다섯 번 밀고 경과 제후는 아홉 번 민다…"라고 하였다. 이것과 대 조하여 보면, 이 때에 행한 고려의 기곡과 적전의 예는 《예기》에 바탕을 둔 유교적 예제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예기》月令思想 의 실천은 이후 다른 유교적 예제와 더불어 고려 왕실에 있어서는 매우 중 요한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월령에 의한 施政의 강화는 보다 뒤인 성 종 7년(988)에 있었던 李陽의 封事 이후에 추진된 듯하다. 즉 동 7년 봄 2월 에 左補闕 兼 知起居注 이양은 봉사를 올려 다음과 같이 禮記的 사상의 구 현을 강조하였다.

그 하나로 옛 명관한 임금들은 天道를 받들어 농사짓는 계절을 가르쳐 줌으로써, 군주는 稼穡의 어려움을 알고 백성은 農桑의 이르고 늦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게 살게 되고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月 수을 살펴보면 '立春에 앞서 土牛를 내어 농사의 이르고 늦음을 보인다 하였으니청하옵건대 옛날 행사를 따라 지금 행하십시요. 그 둘째로 籍田을 친히 경작하는 것은 진실로 현명한 임금이 농사를 중히 여기던 뜻이요 여자들이 하는 일을 경건하게 행함은 어진 왕후가 임금을 돕던 덕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에 정성을 들이고 나라에 경사를 쌓는 것입니다. 《周禮》의 內容職을 살펴보면 上春에 왕후에게 部를 내려 6궁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늦벼와 올벼의 씨앗을 눈틔워서 왕에게 바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임금이 하는 일은 왕후가 반드시 돕는 것입니다. 이제 上春에 上帝에게 곡식 잘되기를 빌고 吉日에 東郊에서 적전을 갈아

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비록 친히 적전을 갈지만, 왕후가 씨앗을 바치는 의식은 행하지 않았으니, 원하건대《주례》에 의거하여 나라의 풍속을 빛나게 여십시요. 그 세번째로 성인은 아래로 지리를 살피고 위로 천문을 보아 시기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며, 임금은 인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만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월령을 살펴보건대 '정월 中氣 후에는 희생에 암집승을 쓰지 말고 나무를 베지 말고, 새끼를 잡거나 알을 뺏지 말며 대중을 동원하지 말며해골들을 묻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새해를 맞이하는 때를 당하여 두루봄에 해야 할 월령을 펴서 모두 이 때에 금해야 할 것과 자연의 법칙을 알게 하소서(《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7년 2월 임자).

이양은 유교사상에 의거한 정사를 베풀도록 상소하고 있다. 월령사상에 관한 내용이 앞 뒤 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 월령에 의하면 '입춘에 앞서 土牛를 내어 농사에 이르고 늦음을 보인다 하였으니 옛일에 의거하여 때를 따라 정령을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예기》월령편에는 토우의 기사가 季冬의 월령 속에 들어 있으며 그 내용도 추위를 쫓는 뜻의 의식이며 봄의 월령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東京夢華錄》의 월령에는 토우를 내어 이로써 농사에 이르고 늦음을 나타낸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수용된 《예기》의 월령편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둘째로 인용된 월령의 내용은 '정월 中氣에는 희생에 암집승을 쓰지 말고 벌목을 금지하며 새끼를 참거나 알을 빼앗지 말고 대중을 동원하지 말며 해골들을 묻어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예기》월령의 맹춘령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같은 이양의 봉사에 대하여 성종은 즉시 그 구체적 실천 방안에관해 교시를 내렸다.

李陽이 말한 바는 모두 경전에 의거한 것이니 마땅히 嘉納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토우를 내는 일은 올해에 이미 입춘이 지났으므로 다음해 입춘 전에 해당 官司가 다시 아뢰어 시행토록 하라. 씨앗을 바치는 일은 마땅히 禮官에게 명하여 의논해 정하게 하고, 籍田을 친히 가는 일과 길일에 王后가 몸소 길쌈을 하는 의례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이것을 통례로 삼도록 하라. 正月 中氣의 初를 당하였으니 公私의 제사에 암짐승을 써서 생명을 해치지 말 것이며 벌목을 금하여 천지 간 盛德의 소재를 범하지 말라. 새끼와 알을 거두지 말며, 어린 싹을 상하게 말며, 침입해오는 적을 막고 城塞를 쌓는 긴요한 일 외에는 대중을 동원하여 농사를 방해하지 말라. 짐승이나 사람의 뼈와 썩은 살이 드러나 있으면 모두 잘 묻어서 死氣가

生氣를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아! 하늘에는 4시가 있어 봄에는 陽和의 덕을 펴고, 임금은 5敎를 행하는데 仁을 禮와 義에 앞세운다. 마땅히 옛 성인의 법에 따라 句芒의 조화에 순응하여 모든 나는 새와 물 속의 고기도 그 천성을 다하도록 하고, 초목도 은혜를 받으며 마르고 썩은 무리들까지도 다 생성의 혜택을 입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마땅히 兩京의 각 관청과 12목의 知州縣鎮使들에게 이 법령을 알게 하고 그 조목들을 힘써 실천하여 나의 뜻을 체득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널리 백성들에게 알려 이 政令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7년 2월 임자).

위의 기사에서는 왕이 구체적으로 내린 정령을 엿볼 수 있다. 즉 토우에 관한 것은 시기가 늦어 다음해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사에 암짐승을 잡 지 말도록 하는 등 이양이 봉사한 내용이 하나하나 정령으로 실천에 옮겨지 고 있다.

이와 같이 성종 때에 와서 월령에 의해 정사를 시행하려 한 것은 곧 유교적 덕치사상의 구현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하겠으며, 아울러 짐승이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대한 깊은 외경을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월령에 의한 정령의 시행이 그 뒤 계속 실천에 옮겨졌으 며, 흩어진 枯骨을 묻는 일도 자주 행하여지게 되었다.

한편《예기》월령에 의해 정령을 시행하는 것은 당시의 자연관과도 유기적인 연관을 갖는다.《예기》월령편에는 孟春에 여름의 월령을 행하면 天時의 이변을 초래하여 雨水가 때를 잃고 초목이 일찍 말라 떨어지며 나라에는 때로 유언비어가 나돌게 된다고 하였다. 또 이 달에 가을의 정령을 행하면 그 백성들에게 크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고 회오리바람과 폭우가 일시에이르며 악초들이 무성하게 되고,이 달에 겨울의 정령을 행하면 홍수와 지나친 비로 수해를 일으키며 눈과 서리가 크게 백곡을 상하게 하고 먼저 심은 곡식도 거두어 들일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등,월령에 의한 정령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이와 같이월령의 실시와 자연현상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사회는 월령사상의 수용과 함께 중국적인 자연관에 대한 측면도 아울러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현종 9년 문하시중 劉琦 등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民庶가 疫癘에 걸리고 음양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다 刑政이 때를 맞추지 않음에 연유합니다. 삼가 월령을 상고하건대「三月節에는 감옥을 살피어 桎梏을 제거하고 肆掠을 없이 하며 獄訴를 정지하고 4월 中氣에는 重囚를 관용하며輕犯을 석방하고 7월 中氣에는 감옥을 수선하며 질곡을 갖추고 薄刑을 처리하며 小罪를 결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獄官令을 상고하건대「立春으로부터 秋分에 이르기까지는 死刑을 奏決하지 못하나 만일 惡逆을 범한 자는 이 숙에 구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法吏가 다 자세히 살피지 못할까 저어하오니, 앞드려 청컨대 금후로는 內外 所司가 다 숙에 의하여 시행케 하소서'하니, 이를따랐다(《高麗史》권 94, 列博 7, 劉瑨).

위에서 《예기》의 월령사상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현종 16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던 것이다.

하늘에 본받고 때에 순응한 뒤에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제 內史門下省 및 여러 관사들이 奏行하는 바가 시정에 어그러짐이 많으니, 음양의 조화를 바라는 것이 어찌 그릇된 일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각자가마음을 다하여 힘써 月유을 지켜 이로써 나의 뜻에 맞도록 하라(《高麗史》권 5. 世家 5. 현종 16년 6월 기미).

時政 즉 월령에 따른 정령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음양의 조화를 바랄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현종 16년 3월에는 白氣가 태양을 가리웠고, 4월에는 가뭄이 심하여 왕이 농사일을 걱정하여 正殿을 피하고 常膳을 감하는 등일련의 責己修德을 행한 바 있다. 그러나 嶺南道의 廣平・河濱 등 10縣에 지진이 거듭되었다. 이같은 연속적인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음양조화의 길은월령에 따른 정사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종의 교서가 내려지게된 것이다.

## (3) 천문관과 유교사상

고려사회는 유교사상을 정치이념으로 수용하면서 중국적 천문사상도 아울 러 받아들이고 있었다.4) 그것은 천인합일사상에 입각한 천문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즉 천문상의 변이는 군주나 치자계층의 부덕의 소치로 말미암

<sup>4)</sup> 李熙德, 〈天文觀과 儒敎政治理念〉(앞의 책), 61~93쪽.

아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치자에 대한 天譴으로 인식하고 修省과 덕치주 의를 지향하여 항상 선정을 구현토록 촉구하였다.

《고려사》天文志의 서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즉 伏犧・黃帝・堯・舜 등 중국의 전설적인 이상시대 통치자들이 이미 천문의 운행과 그 법을 살펴서 曆日과 璣衡으로 觀天의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 이래 天이 드러낸 형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여 성인이 이를 전형으로 삼아, 인간사회로 하여금 경계하고 修省토록 하였던 것이다. 공자가 《춘추》를 편찬할 때에 日食과 星變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기록한 까닭도 그러한 천의를 인간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에서 말한 성인이나 공자가 그러했 듯이 《고려사》의 편찬자들이 고려시대의 日食・月食・五星凌犯 등 천문의 변이를 수록하는 의도도 위와 흐름을 같이한다. 물론 이들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이미 새 왕조의 지배층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여기에 반영하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의 지배층들도 같은 천문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천문현상 중에서도 일식을 가장 큰 재이로 믿게 된 것은 태양이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식의 대상인 태양은《漢書》孔光傳에 보면 군주를 상징한다고 하며, 달을 동 李尋傳에서 妃后・大臣・諸候之象이라 한 것을 보면, 日月이 군주와 후비 및 대신의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는 한편 음양설에 의한 해석이 곁들여 있음을 알 수있다. 이처럼 태양이 군주의 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식현상은 군주에 대한 반역적인 臣者나 惡勢力의 침범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일식현상과 때를 같이하는 반란이나 모역 등은 서로 연관된 사실로 해석되곤 하였다.

인종 13년 정월에 일식이 있었지만 구름으로 가리워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 뒤에 일어난 서경의 妙淸·柳旵·趙匡 등이 일으킨 이른 바 묘청의 난을 예시한 천상의 구징으로 해석되었다. 일식의 원인을 그 밖의 다른 데서 찾기도 하였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日의 상징인 군주 스스로의 부덕한 정치와 생활이라는 것이다. 《예기》昏義篇에 의하면 男敎의 不修, 陽事 不得의 소치로 일식이란 재이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靖宗 9년 5월에 일식이 있었는데, 왕은 명을 내려 스스로가 부덕하여 이같은

처변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러 차례의 재변을 이르게 하였다 하고. 正 殿을 피하며 죄인을 특사하는 등의 반성과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일식 등 천변은 결국 군주의 실정과 부덕한 행위에 대한 天戒와 前兆로 설명되었다. 그러면 이같은 하늘의 예시에 대해 군주는 어떻게 반성 하고 책임을 졌던 것인가. 이것은 결국 예시된 구징에 대하여 마땅히 수성과 消災, 즉 부조한 음양에 대한 조화를 꾀하여야 했다. 그 소재의 방법으로서 가장 전형을 이루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예기》혼의편의 '일식이 있으면 천자는 素服을 입고 6관의 직을 다스려서 천하의 양사를 소탕하며 교화를 실현함으로써 천계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왕이 정전을 피하고 素襛을 입고 겸허하게 자책함으로써 변이의 소멸을 구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일식변이에 대한 소재 의식은 「救日月食儀」란 행사이다. 이것은 일 식이 있는 당일 陪衛하는 群臣은 玄冠 素服하고 왕은 소복으로 나아가 救食 하는 절차에 따라 일정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일식이 일어 날 때마다 행하여졌으리라 판단되는데, 이것으로도 소재와 祈禳이 충족되었 다고는 믿지 않았다. 정종 9년 5월에 일식이 일어나자 왕은 制書를 내려 부 덕의 소치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변이 발생한 것이라 밝히고, 이에 대한 소재 의 방법으로서 尙食局으로 하여금 鷹鷂軍을 놓아주게 하고 또 葉滬 즉 통발 로 물고기 잡는 것을 금하였으며 또 죄인을 특사하는 영을 내리고 정전을 피하는 등 거듭된 재이 퇴치를 위한 禳法을 실시하였다.

이 때의 소재 의식은 비단 일식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그 해 봄부터 계속 된 가뭄에 대한 기양과 복합된 것이라 믿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응요 군의 방면과 捕鳥의 금지 등은 당시 불교의 살생금지 등과도 관련된 것이라 여겨진다. 일식이 일어났을 때에 불교적 소재 의식도 있었다. 문종 워년 3월 의 일식에 대해서 御史臺는 春官正 柳彭과 太史丞 柳得韶가 曆算을 정밀하 게 하지 못해 예보를 맞추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파직하라고 거듭 탄핵하였 다. 이미 왕은 친히 乾德殿에 般若道場을 5일 동안이나 설치하여 소재의 의 식을 행한 바 있다. 그 뒤 의종 때에는 일식이 일어나자 宣慶殿에 消災道場 을 베푸는 등 불교적 소재도량을 자주 베풀기도 하였다. 이 밖에 일식의 구 징을 소재하기 위하여 왕실의 停宴, 輟朝, 군주의 損膳 등 왕자나 지배층이

평소의 화려한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천의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 勤政과 寬刑을 베풀어서 유교적 예교정치의 실을 거두게 하려는 정치윤리가 잠재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하늘의 경계를 관찰해야 할 日官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憲司 등 당국의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 2) 효와 예

#### (1) 5륜과 5교

유교의 실천유리 중에서 효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나. 이것이 확대 발전하여 五敎나 五倫思想으로 체계화되었다.5) 즉 유교유리의 덕목 가운데서 군신과 부자 사이의 덕목인 충효를 비롯하여 형제ㆍ부부ㆍ장 유 등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제적·예제적 질서가 차츰 마 련되어 갔다. 이러한 덕목 중에서 효 즉 부자의 유리가 강조되어 있다 하더 라도 필경 이것은 전제군주에의 의리를 위한 지주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러 한 사실은 바로 중국의 법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예컨대 唐律의 十惡에 있어서 서두의 1조에서 3조까지는 謀反・謀大逆・謀叛 등이며. 제 4조 이하 에는 부모 등 가족유리가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제7조의 불효항에는 부모 에 대한 고발행위에 있어 고발자인 자손은 絞首刑을 받지만, 謀反・謀大逆・ 謀叛 등 국가나 왕실에 대한 중죄를 고발할 때에는 비록 자손에 의한 親告 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에서는 전부터 전제체제의 통치수단인 법률에서 명백히 군주에 대한 신민의 의리가 제일의 적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유교주의 하의 실천윤리에서 효의 윤리가 가장 중 요시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군신의 윤리를 강화하거나 지탱하기 위한 장 치로 발전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효사상과 효행의 유형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sup>5)</sup> 李熙德, 〈儒敎의 實踐倫理〉(앞의 책), 250~288쪽.

5륜이라는 유가의 실천윤리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고려 시대 유교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우선《高麗史》의 忠義・良吏・孝友・烈女傳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군신의 덕목에 속하는 양리전·충의전을 중심으로 한 유교의 실천윤 리를 살펴보겠다.《고려사》충의전의 서문에는 생명과 의리가 공존할 수 없 을 적에는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여야 하며, 충신ㆍ의사는 무서운 형벌 을 무릅쓰고 생명보다 의리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무릇 군주에 대 한 신하의 의리는 변고를 만나면 생명을 가벼이 던지고 순절해야 하는 절대 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유교주의적 전제군주체제에 있어서 신하의 도리는 상 황에 따라서 다양하였다. 고려시대의 유교주의체제에 있어서 신하의 의리에 대한 稼亭 李穀의 臣論을 보면 "신하의 종류로는 重臣과 權臣이 있고 直 臣・忠臣・奸臣・邪臣이란 것이 있다"고 하였다.6) 신하의 도리란 것은 결국 군주에 대한 자신의 희생과 봉사라 하겠으나. 그것은 군주 자체에 대한 충성 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올바른 정치를 성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곡도 그의 臣說의 서두에서 "옛날에 신하가 된 자 는 차라리 임금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더라도 감히 백성에게 원망을 사지 않 았으므로 爵祿을 급히 하려고 하지 않았고. 차라리 오늘의 기림을 얻지 못할 지라도 감히 후세에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 하므로 공적과 업적을 쌓으려 하 지 않았다"까고 하였듯이. 신하의 도리는 군주에 대한 상대적 관계보다도 후 세에 비방을 받지 않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義의 실현이며 군주를 매개로 한 天命의 실현 그것이기도 하다. 이곡의 臣說은 신하의 명분을 밝힌 매우 주목 할 만한 것이라 보이는데 이와 같이 유교주의적 실천윤리를 자각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윤리적 기록을 우리는 《고려사》의 양리전이나 충의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양리전에는 知刑部事 庾碩이 성품이 강직하고 청백하여 공평무 사한 관리생활을 보낸 사례로부터 東京留守 王諧 등 모두 5명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충의전을 보면, 洪灌・高甫俊・鄭顗・文大・曹孝立・鄭文鑑에 이르는 6인의 충의 사실이 열거되어 있다.

<sup>6)</sup> 李 穀、《稼亭集》 권 7, 臣說送李府令歸國.

<sup>7)</sup> 위와 같음.

다음에는 5륜 중 夫婦有別과 관련하여 《고려사》의 열녀전 및 후대의 《三 綱行實》이나《新續東國三綱行實》등의 열녀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부부간의 실천유리를 보기로 한다. 《예기》에서 말하는 夫義婦德. 夫唱婦隨는 이른바 유 교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夫妻의 지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주역》에서도 "夫 는 乾道로 강건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이끌 덕을 가지나. 婦는 坤道로 柔順 을 귀히 여기고 從順을 덕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고려사》열녀전에 실린 열 녀는 胡壽의 妻 兪氏 외 열부 11인의 사적이 실려 있으며. 《삼강행실》 · 《신 속동국삼강행실》열녀편 등에 고려시대 열녀에 관한 사적이 전승되고 있다. 부인의 정절은 유교적 유리의 하나로서 국가는 충ㆍ효의 유리와 함께 널리 장려하여 그 보급에 힘썼던 것이다. 더욱이 왕실로부터의 義夫・節婦・烈婦에 대한 포상행사는 크나큰 효과를 미쳤을 것이다. 禮制에 있어「老人賜設儀」에 의하면 老人・孝子・順孫과 함께 절부가 일정한 포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유 교유리의 강화정책은 법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高麗律의 모태가 되었던 당률에 의하면 그 10악의 7조인 불효항 다음인 9조의 불의에는 처의 남편에 대한 의무와 제약이 설정되고 있다. 즉 남편과 大功 이상의 존장자를 구타하 거나 告罪하는 행위는 「不睦」에 속하고 또 남편의 상을 듣고도 상을 감추거 나 놀이를 즐기거나. 평복을 입거나 개가하는 행위는 곧「不義」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즉《고려사》형법지에는 처의 남편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의 의무가 周親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와 거의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처의 남편에 대한 不從을 법에 의해 제재하고 있었 다. 이처럼 강제된 부인의 정절이 유교주의정치이념의 소산임은 재언을 요하 지 않는다. 이와 같이 거의 일방적이라 할 처의 남편에 대한 의무에 비하여 남편이 받는 구속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려사》 형법지 大惡條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를 냈거나 물체로 상처를 내면 곤장 80 대, 이를 한 대 이상 부러뜨린 자는 90대…"라 하여 남편의 처에 대한 무제한 의 폭행을 법으로 막고 있다. 또 亂時에 외적의 침입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처 의 汚節을 이유로 처를 버린 사람은 관직을 파면시키는 등 인도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남편은 처부모에 대하여 五服制度에서 父祖의 다음 가는 근친급의 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長幼有序와 兄良弟弟에 관해서 살펴보면 《孟子》의 5류설에는 "長幼 有序"라 하였고《禮記》禮運篇에서는 "長惠幼順"과 "兄良弟弟"라 하여 장유 와 형제의 2륜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예기》曲禮에 "以年長倍則事父 以 十年長事兄 以五年長則友"라 하여 장유의 禮序를 규정하고 있다. 장유유서를 규제한 법률을 《고려사》 형법지는 尊長과 卑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동 일한 죄에서도 극심한 형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禮制도 혈연과 장유란 기본질서 위에 성립되었음은 말할 것 없지만, 특히 殤服의 경우에는 연령차이에 따라 喪服禮를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다음 朋友有信에 있어서 信은 朋友 교제의 근원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 라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앞서 인용한《예기》곡례에"以 五年長則方"라 하였으므로, 5년 내외는 붕우로 삼을 수 있는 연령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붕우와 형제의 倫常의 선후나 중요성을 논의의 대상으 로 하고 있기는 하나 혈연을 중히 여기는 유가적 윤리사상의 이상은 역시 형제가 붕우에 앞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붕우 사이의 유상은 극히 도덕적 규범에 머물고 있을 뿐, 일정한 예나 법제상의 강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 윤리와 법

고려시대에 와서 유교는 통일신라 이후 사상적 성숙과정을 거쳐 새시대의 정치이념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8) 교육과 과거에 있어 유교가 채용되고 법률과 예제에 있어서도 유교사상이 침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교사상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그 심층적·내면적 바탕에는 효사상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孝經》은 신라 이래 가장 중요한 윤리서로서 위로는 군주로부터 지배층에게 필수화되고 나아가서 민간에까지 널리 확산되어 갔다.

고려시대에 효사상을 펴기 위하여 국자감 學式에 《논어》와 함께 효경을 필수로 兼通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양서를 閭巷의 어린이들에게 내려주기 도 하였으며, 태자가 實文閣에 나아가 《효경》을 친강하기도 하였다.

<sup>8)</sup> 李熙德, 앞의 책, 249~288쪽.

한편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효경》은 단지 何論業에〈곡례〉와 함께 선정되어 있을 뿐이나, 명경업이나 제술업을 막론하고 수험에 앞서 국자감에서 경전 학습의 과정에서 이미《효경》이 先修科目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시험과목으로 직접 부과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줄어들 수는 없었다.

《효경》三才章에 "曾子曰 甚哉 孝之大也 子曰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 하여, 효는 天地人을 일관하는 도로서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보편 질서로 천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의 보편질서로서의 효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군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효경》에는 天子·諸候·卿大夫·士·庶人에 이르는 효를 정하여 이른바 5효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5효 중에서도 천자가 愛親과 敬親을 다할 때 백성에게 도덕적 교화가 베풀어진다고 하였으므로 먼저 군주가 몸소 효행을 실천하여야 했다. 군주의 효행으로서 舜임금의 大孝를 들고 있거니와 유교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던 성종은 그 9년에 내린 교서에서 유교주의적 政敎를 밝혔다.

무롯 국가를 다스림에는 반드시 먼저 근본됨을 힘써야 하는데 근본됨을 힘쓰는 것은 孝에 더함이 없다. 이는 3皇 5帝의 本務이며 萬事의 紀綱이요 百善의 主인 것이다. …이러므로 법칙은 6經에서 취하고 규범은 3禮에 의거하여 한나라의 풍속으로 하여금 모두 5효의 門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바란다(《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9년 가을 9월 병자).

이와 같이 군주가 효의 실천자로서의 자각을 가졌던 고려사회에서는 군주로부터 士庶에 이르기까지 효행은 중요한 덕목으로서 윤리 규범화되고 있었다. 특히 군주는 효의 실천자로서 의제화되었다. 그것은 왕의 사후에 붙이는 시호에 '孝'자를 사용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군주에 대한 '孝' 자의 시호 사용은 유교주의체제 하에서 군주 스스로가 효행의 체현자이며 垂範者로서의 표정인 것이다.

고려는 유교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권의 지주가 되는 관료들에게 우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된 제도는 관리에 대한 給假制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당해 직역의 유보나 면역 등의 혜택을 주어 효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걸음 나아가 효행을 위해서는 형벌의 집행까지도 유예하는 등 효치주의 실현에 주력하였다. 효행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로서 《孝經》紀行孝章 제10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평소에 계실 때에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즐겁게 해드리며, 병이 나면 근심을 다하며, 돌아가셔서 상을 치를 때는 슬픔을 다하며, 제사지낼 때에는 엄숙하게 해야한다. 다섯가지가 갖추어진 후라야 부모를 섬길 수 있다'고 하셨다…"라 하여 효행의 5단계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효경》의 효행방법은 고려 사회의 효사상 실천에 그대로 원용되었으리라고 믿어지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송의 율령이나 예제질서에서 직접 수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효 윤리의 실천을 위한 관리 給假에 대해서는《高麗史》刑法志 官吏給假條와 禮志의 五服制度 및 百官忌暇條에 그대강이 정리되어 있다. 관리의 효행을 위한 급가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앞서《효경》기행효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대한 것과돌아간 후의 효행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살아있을 때의효행을 위한 급가로는 定省・看病・老侍 등을 위한 급가가 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필요한 급가로는 遭喪・忌祭・掃墳・改葬 등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定省給假의 사례를 보면 靖宗 11년 2월의 制를 들 수 있다. 즉 문무관의 부모가 300리 이상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 3년에 한 번씩 정성급가 30일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충목왕 때에는 외임 관리의 부모가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면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빼고 20일의 급가를 주라고 규정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侍養給假, 병중 부모를 문병하기 위한 病暇, 부모의 상을 위한 喪暇와 起復制度, 부모의 제사를 위한 忌暇, 사후 무덤의 관리를 위한 掃墳暇, 묘지의 改葬을 위한 改葬暇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나 군역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효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 걸음 나아가서는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치죄를 잠시 유예하고 孝養과 喪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즉 문종 2년 정월의 제에서는 범죄로 유배되는 경우 만일 노친이

있으면 잠시 侍養을 위해 유예하고 부모의 사망 후에 형을 집행케 하였는데,이는 형법의 유예를 통해 효행의 실제를 거두려고 한 좋은 실례라고하겠다.

이와 같이 효행을 위해 여러 가지 법제적 장치와 더불어 復讐・割股・廬墓 등의 더욱 극단적 효행이 용납되고 장려되었다. 유가에서 복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예기》의 "父之讐 弗與共戴天"과,《공양전》의 "君弑 臣不討賊 非臣也 不復讐 非子也" 등의 구절에 근거한다. 즉 부모나 주군에 대한 복수를 용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의무처럼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복수에 관한 예로서 고려 무신정권 초기에 피살된 金光中의 아들 金蔕는 가해자 朴光 升과 그 아버지까지도 연좌하여 공공연하게 이들 부자 두 사람에 대해 복수의 살인을 감행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割股孝行이란 부모의 난치병에 자식이 다리의 살을 베어 약으로 쓰는 행위이다. 중국에서는 唐代 名醫 陳藏器가 난치병에 인육이 좋다는 처방을 내리면서부터 널리 퍼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할고효행이 별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큰 효행으로 포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에는 최대의 효행으로서 오히려 포상을 받아 旌門・旌閭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廬墓란 상을 치른 후 묘 옆에 여막을 짓고 거기서 3년의 喪期를 보내는 의식인데,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할 생활인으로서는 매우 지키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고행을 치른 효 행자에게 포상을 하였다. 실제로 고려시대의 효행자 가운데에는 여묘효행의 많은 예가 있다.

효행은 치자가 솔선수범하고 법이나 예제로서 장려할 뿐 아니라 대면교화를 위해서 효행자를 여러 가지로 포상하기도 하였다. 포상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嚮禮로부터 賜物, 신분의 上昇・授官・特進 그리고 力役이나 租賦의 감면 등 여러 가지 특전이 국가로부터 베풀어졌다. 또 다른 포상방법으로 효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孝廉制가 실시되었는데 성종・현종대를 이어 고려 말기에 이르도록 孝廉者 관리 탁용의 실례가 있다.

다음에는 高麗律과 효행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고려가 유교주의 정치이

념을 펴나가면서 律 즉 형법에서는 효사상을 어떻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가를 보려는 것이다. 율이란 禁制規範으로서 이러한 법적 금제가 이 시대의 정치 이념인 유교사상, 특히 효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효윤리의 실천을 위한 금제규범이란 필경은 불효에 대한 치죄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고려율이 이러한 형률을 어떻게 제정실시하였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정비한 고려사회에 있어서 형률의 경우에도 그 大範은 당의 것을 수용하였다. 효사상과 관련된 당률은 10악조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그 항목은 제국과 제실의 안위에 관한 내용과 함께 父祖나 친족에 대한 유교적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효제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0악은 ① 謀反 ② 謀大逆 ③ 謀叛 ④ 惡逆 ⑤ 不道 ⑥ 大不恭 ⑦ 不孝 ⑧ 不睦 ⑨ 不義 ⑩ 內亂의 10항목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효 관계를 내포한 조목은 ④ 악역 ⑦ 불효 등이다. 이같은 당률의 10악이 《고려사》 형법지에는 戶婚條・大惡條・禁令條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려율의 10악 중에 불효의 규제에 대해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고발과 詈罵행위에 대한 형률이다. 이것은 부모나 조부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자손이 고발한 것에 대한 형률과 또한 부조에 대하여 불온하게 욕설을 자행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이를 불효로서 징벌하기 위한 율이다. 이 중 구타·고발·욕설에 대한 고려율을 보면 "殿祖父母父母斬 告詈絞"라하였다.9) 즉 만일 조부모나 부모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이를 法司에고발했을 경우, 부모나 조부모에게 욕설을 했을 때 다같이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구타나 고발, 욕설 등이 실로 있기 어려운불효임에 틀림없겠으나 모두 斬・絞 등의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가혹한 처벌규정이라 하겠다. 그리고 부조의 범죄에 대한 자손의 고발행위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였다. 즉 당률에서도 謀反・謀大逆・謀叛 등 국가나 황실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부모나 조부모가 비록 명백한 범죄자

<sup>9)《</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大惡.

라 할지라도 부조 스스로의 자수와 같이 간주되어 그 죄과를 지은 당사자는 면죄받고, 오히려 부조의 죄를 고발한 자손은 예교를 파괴한 불효자로서 絞 罪란 극형을 받게 되어 있다. 더욱이 당률에서는 부조의 범죄를 고발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친속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알 더라도 은폐하여야 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윤리관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부조의 범죄를 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법의 정신은 부조를 포함한 親屬 容隱思想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춘추시대의 直躬이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관가에 고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父爲子隱 子爲父隱"이라고 《論語》에서 말하였으나, 法家의 韓非子는 직궁의 행위가 公直無私한 장려할 만한 행위라고 하였다. 여기서 유·법 양가의 대조적인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의 至親용은사상은 《춘추》에도 나타나며, 한대의 유교주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더욱확고하게 계승되었다. 이리하여 당률에 와서 예제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밖에 불효를 규제하는 형률로서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와 호적을 달리하거나 재산을 분리하거나, 그리고 공양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別籍異財, 供養有闕의 율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상중불효에 대한 형률로서 忘哀作樂雜戲, 釋服從吉, 匿不擧哀, 조부의 상을 사칭한 求暇, 喪中稼娶 등에관한 율이 있다.

다음에는 악역이란 형률이 있다. 이는 10악 중에서도 불효행위의 극단을 이루는 것으로 부모나 친속에 대한 구타와 모살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고려사》 형법지 대악조에는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하였을 때에는 斬이며, 告置하였을 때에 絞, 잘못하여 상처를 내었거나 과실로 욕한 자는 徒 3년, 과실로 구타했을 때에는 流 3,000리를 가한다는 율문이 있다.

고려율이나 당률에서 볼 때에 악역의 핵심이 되는 것은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구타행위와 모살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율에는 모살에 대한 조문이 보이지 않고, 당률에서는 모살에 대하여 名例律 10악의 악역에 관한 註에 삽입하였을 뿐, 실제로 그 악덕행위를 처벌할 규정인 賊盜律에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親弒가 인륜 예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율문조차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불상사

가 발생하면 그 처벌은 극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부조에는 비교될 수 없는 期親尊長 즉 伯叔父母나 兄姉의 살해를 음모한 행위로 참형에 처할 뿐 아니라, 단지'毆祖父母父母者'가 참형을 받으므로 친시란 더 이상 적용할 형량이 없지만 결국 극형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당률을 따르고 있는 고려율에서 친시에 관한 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률의 예교적 정신을 받아들인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중국이나 고려사회에 있어서도 친시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일찍이 춘추시대 邾婁定公 때에 弑父者가 있었는데 그를 극형에 처한 것은 물론,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터에는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게 하였으며 군주는 한 달 동안 술을 금하였다고 한다.10) 고려시대에도 실제로 부조를 구타한 사건이나 부모를 시해한 사건의 사례가 여려 건 보인다. 이러한 시해 사건에 대한 형량을 보면 죄인의 棄市와 斬首梟市, 해당 지방 수령과 관원의 파직 등의 처벌이 있었다. 이것은 춘추시대 주루정공의 관례를 준용한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불효자에게는 형률에 따라 준엄한 처벌이 가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효자이면서도 요행히 관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불효 사실이 드러나면 司直의 탄핵을 면할 길이 없었음 은 물론이다.

이처럼 불효자는 엄중한 형률에 의해서 처벌될 뿐 아니라, 한 번 불효를 저지르게 되면 당사자와 더불어 그 자손에게까지 연루되어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특전이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첫째 불효자의 자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즉 靖宗 11년 4월의 웱에서 五逆五賊과 不忠不孝者는 과거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불효자는 자손에게까지 학교의 문도 막혀 있었다. 그리고 불효자에 대해서는 사면령에서도 그 혜택을 베풀지 않을 만큼 중죄로 취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유의할 것은 불효자를 恤刑의 대상에서도 제외시킨 점이다. 유교정치 이념에 있어 사면은 군주의 失德을 보완하는 작용으로 간주되었는데 불효자의 사면은 오히려 재화를 초래한다고 믿을 만큼 천지도 용납하지 못할 죄로 간주되

<sup>10) 《</sup>禮記》 檀弓 下.

었던 것이다.

# (3) 유교의 실천윤리

고려시대 유교정치 이념의 수용과 그 전개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미 앞 항에서 효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고려사회가 유교주의사상을 그 정치체제의 실천윤리로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예교의 정비와 더불어 법률질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비하였던 것을 알 수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로는 효사상의 실천을 위한 고려의 여러가지 실천적 노력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도에 따라 과연 어떠한 효 행이 고려사회에서 실현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에서는 먼저 고려시대 효행의 실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당대 유교윤리 의 실천과정에서 5교 또는 5륜사상의 전개와도 유기적 관련이 있었음을 해 명하게 될 것이다.11)

효행의 실제에 대하여서는 특히 중국에서 전래된 이른바 24효 등의 효행유형과 대비하면서 고려사회에 나타난 그 유형을 살펴보고, 또 당시 신앙면에서 보편적 위치에 있었던 불교와 효사상과의 관계를 아울러 살펴보려고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당시 유교와 불교와의 효를 통한 사회적인교섭면을 밝힐 수 있으며, 그 결과 불교에서도 유가의 효사상의 실현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5륜사상의 전개에 대해서는 효사상의 확대·발전으로서의 군 신·부부·장유(兄弟)·봉우의 네 가지 倫常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리고 5륜 중에서도 결국 그 중핵을 이루는 충과 효에 대하여 다시 대비함으 로써 당대 정치윤리의 심화현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4효와 효행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효를 유교의 실천윤리로 실천함에 따라 많은 효행이 실 제로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더러는 허구적인 효행담이 발생하여 효에 대

<sup>11)</sup> 李熙德, 앞의 책, 249~288쪽.

한 신비적인 영험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그 사상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이른바 24효, 혹은 240효라 하여 효행에 탁월한 역대인물의 행실을 모범으로 삼고 이것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효윤리의 보편화에힘썼다. 효행에 대해서는 일찍이《晋書》권 88, 孝友篇에서부터《淸史稿》권 502, 孝義篇에 이르기까지 역대 사서에서 독립된 편목으로 기록하여 길이 후대에 전하였다. 그리고 남송의 趙孟堅에 의한《趙子固 24孝書畵合壁》은 전형적인 효행담의 집성이라 하겠다.《조자고 24효서화합벽》은 효행을 圖說, 즉그림과 설명을 붙여 일목요연하게 나타냄으로써 무지한 민중도 이해할 수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효행 사적이 독립된 편목으로 다루어진 것은《三國遺史》권 9에 실린 孝善篇이 그 시작이다. 이 효선편의 내용은 신라시대의 것들인데,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向得舍知割股供親, 孫順埋兒, 貧女養母 등 에서 向得의 경우를 제외하면 불교적 효관념을 중심으로 효행을 기록한 것 들이다.

고려시대에 權溥는 《孝行緣》을 편찬하였는데, 그 서문에 의하면 일찍이 권부의 아들 準이 工人을 시켜 24효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의 사위 益 齋 李齊賢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을 쓰게 하였다. 그 뒤에 준은 이것을 아 버지 권부에게 보였으며, 권부는 다시 38가지 효행기사를 보충하고 찬은 역 시 이제현에게 맡겨서 《효행록》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62효행기사 로 늘어난 《효행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음《고려사》권 121의 孝友列傳은 충의, 열녀전과 함께 당대 유교적 실천윤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려시대의 효행 사적을 수록한 것으로는 세종 14년 集賢殿 提學 偰循에 의해《三綱行實》이 편찬된 이래《東國新續三綱行實》등은 물론《慶尚道地理志》,《慶尚道續撰地理志》나《增補東國興地勝覽》등에서 지방 출신별로 효자 항목을 넣고 시대별로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있었던 효행 사적을 열녀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효행 사적 중에서 고려시대 효행의 유형을 중국의 효행, 특히 24효의 유형과 대비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의 효행의 실상을 구명하여 보려고 한다. 중국에서도 24효의 유형은 몇 가지로 달리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앞서 본 조자고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런데 조자고가 제시한 24효는 권부의 《효행록》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효행록》 의 경우, 앞 부분의 24효는 권준에 의해 선정된 것이며 뒷 부분의 38효는 권부 스스로가 추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권준에 의한 24효의 효행 사실과 조자고의 24효와 비교하면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15사항이며 다른 것이 9항이다. 그러나 권부가 보충한 38명의 효행자 가운데는 다른 9항의 행적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전승된 24효의 유형이 이미 고려사회에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趙子固 24孝書畵合壁》의 순서에 따라 권부의《효행록》과 대비하면서 고려사회에 전래된 효행의 유형과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 ① 虞舜의 孝感動天

虞舜은 지극히 부모에게 효행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감응하여 歷山에서 밭을 갈때에 象鳥가 원조하였는데 堯임금이 이것을 듣고 뒤에 帝位를 선양하였다는 것이다. 고려 권부의《孝行錄》에서는「大舜象耕」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내용도 같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는 볼 수 없다. 그러나 李穀의《稼亭集》趙苞忠孝論에서 이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舜을 위대한 효행의 儀表로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晋 楊香의 縊虎救父

진나라의 15세 소녀 楊香은 아버지를 물려는 호랑이를 쫓고 그 생명을 구했다. 고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高麗史》孝友列傳에 실린 崔婁伯傳이다. 즉 15세의 소년 婁伯은 그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도끼를 들고 달려가 그 호랑이를 죽이고 뱃속에 들어 있는 아버지의 骸肉을 꺼내 장사 지냈으며, 3년간 흙을 져서 무덤 위에 덮고 廬墓까지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 ③ 晋 孟宗의 哭竹牛笋
- ④ 晋 王祥의 剖冰求鯉
- ⑤ 漢 郭巨의 爲母埋兒
- ⑥ 魏 王裒의 聞雷泣墓
- ⑦ 漢 董永의 賣身葬父
- ⑧ 漢 丁蘭의 刻木事親
- ⑨ 宋 朱壽昌의 棄官尋母
- ① 周 剡子의 鹿乳奉親
- ① 周 仲由의 爲親早負米

- ② 周 老萊子의 戲綵娛親
- ③ 漢 文帝 親嘗湯藥
- Ⅲ 漢 江革의 行傭供母
- ① 漢 陸續의 懐橘遺親
- (6) 周 閔損의 單衣順母
- ① 晋 吳猛의 恣蚊飽血
- 18 蔡順分棋
- ⑨ 齊 庾黔婁의 嘗糞心憂
- 20 周 曾參의 嚙指心痛
- ② 漢 黃香의 扇枕溫衾
- ② 唐 崔山南의 乳姑不怠
- ② 漢 姜詩 涌泉躍鯉
- ② 宋 黄庭堅의 親滌溺器

위에서 중국의 孝行例 24가지를 들었으나 여기서 모두 고려시대의 효행사례와 대비할 수는 없다.<sup>12)</sup> 그러나 이것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24효 가운데 대부분의 효행 유형이 신라 이래 고려시대에 걸쳐 한반도에 보급 전파되어, 그와 유사한 형태의 효행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효행이 비록 실제로 실현된 예가 없다 하더라도 문인 등 지식인의 작품에서 비유 인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24효와 대비되는 고려시대의 효행 사례 이외에 《고려사》 효우열전 과 《삼강행실》 《동국삼강행실》 《신속동국삼강행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효자편에 나오는 효행자 가운데 몇몇 특이한 효행자를 덧붙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徐精의 冱寒生蛙

徐積의 孝心에 하늘이 감동하여 嚴冬에 生蛙를 주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였다.

② 余孝悌의 感鳥

晋州入 余孝悌가 지극한 효도로 어머니의 무덤에서 廬墓하던 중 까마귀를 감동 시켰다.

③ 車達 棄妻

全羅道 雲梯縣 祗弗驛民 車達 3형제는 지극한 정성으로 노모를 봉양하였는데, 車達은 노모에게 不謹한 아내까지 버렸다.

<sup>12)</sup> 자세한 내용은 李熙德, 위의 책, 252~261쪽 참조.

④ 金遷 贖母

고려 말 江陵府吏 金遷이 몽고에 잡혀가 노예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백금 50량 으로 贖錢하고 구출하였다.

⑤ 尹龜牛 刻石立碑

判典農事 尹龜生이 家廟를 세우고 《朱子家禮》에 의한 三代祖祭를 지내고 또 묘 앞에 碑와 齋室을 세웠다.

이 밖에 인종 때의 鄭知常은 개경의 관직생활로 노모를 봉양하지 못하자 자신이 까마귀만도 못하였음을 후회하고, 또 老萊子의 효행을 본뜨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牧隱 李穡의〈永慕亭記〉에 실린 郭麟의 아들 郭之泰 와 손자인 郭忠秀의 효행을 찾아볼 수 있으며,13) 吉再의 誠孝를 들 수 있을 것이다.14)

이상에서 고려시대 효행 사례를 먼저 중국에서 전승되어온 24효와 대비하여 보았고 이어서 《고려사》의 효우열전과 《삼강행실》 등에 실린 효행 사례중 특이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지상의 사례와 목은 이색의 〈영모정기〉에 실린 곽린 자손의 효심 및 길재의 성효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이들은 저명한 당대의 문인 학자이며 지식 관리들이어서 그들이 익힌 유교적 교양에 의한 효행을 실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증만으로는 고려사회 전반에 걸친 효의 실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고려 일대의 효행자 중에는 하급관리나 향리 및 평민·천민들의 행적도 들어있으므로, 효사상이 널리 민간에 침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불교의 효사상을 살펴보겠다. 고려시대에 있어 불교는 고려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므로, 당시 점차 제고되고 있었던 유교정치이념과 매우 대척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은 崔承老의 봉사 중에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현종 때의 蔡忠順이 '儒釋二門皆宗於孝'15)라고 한 데에서도 유・불의 和會的 조화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정치 · 사회면에서 기반을 넓히고 있던 유교사상의 도전에 대한 불가

<sup>13)</sup> 李 穑,《牧隱集》文蒿 권 4, 永慕亭記. 《東文選》권 74. 永慕亭記.

<sup>14)</sup> 吉 再,《冶隱集》行狀.

<sup>15)〈</sup>高麗國靈鷲出大慈恩玄化寺碑陰記〉(《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247等.

의 이러한 반응은 自家의 護敎를 위하여도 부득이한 것이었다. 일찍이 유교 주의적 사회인 중국에 불교가 수용되었을 때도 불교는 유교와의 융합점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때문에 불교는 유교와 대립되는 실천윤리 중에서도 그 핵심을 이루는 효윤리에서 하나의 교섭점을 찾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국 불교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담은 경전을 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경전은 원래 불교자체에 있었던 효행과 관련된 소재를 기초로 삼아 이를 유교적 효행과 유사하게 꾸미거나 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조하여 성립되었거나 더러는 순수한 중국적 불교의 僞經類로 등장하게 되었다.

효에 관한 불교 경전으로는 《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석가가 成道 후 곧 도리천에 있는 어머니 摩耶夫人에게 설법하기 위해 승천하여,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고 석 달 동안 효양을 지극히 행했다는 것이다. 이 경전은 후세의 불교도들이 유가의 공격에 대해서 늘 석가의 효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밖에 《六方禮經》《長阿含經》《孝子經》《孝子報恩經》《孝子攝經》《談子經》《孟蘭盆經》《佛說父母恩難報經》《大方便佛報恩經》《大無量壽經》《觀無量壽經》《父母恩重經》《梵網經》등 실로 효사상을 담은 많은 경전을 남기게 된 것이다.

효를 설한 이러한 경전이 불교의 전래와 수용에 따라 한반도에도 전파되었을 것은 필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자료로서는 《범망경》 《부모은 중경》, 그리고 《우란분경》 등 몇몇 효경전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범망경》은 일찍이 元曉의 저작에서도 발견되므로 그 전래시기가 자못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은중경》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 현종 때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한편《우란분경》은 大覺國師 義天의 문집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目連經》과 함께 고려시대 이래 성행되었던 盂蘭盆齋의 所依經典으로 중요시되었다. 《우란분경》의 내용은 餓鬼道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출하는 것으로, 매년 7월 15일에 우란분회를 지내면 그 공덕에 의해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세 무병하며 일체의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7세의 부모도 三塗의 苦界로부터 벗어나서 生天하고 福樂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목련경》에 대한 최초

의 기록은《고려사》권 12, 예종 원년 7월조에 숙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목 련경》을 강설했다는 것이다.《목련경》은《佛說大目連經》으로서 이 땅의 불 교도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경전의 하나라고 한다. 또 이 경은《父母恩重 經》이나《八陽經》과 함께 한국의 僞撰經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6)

어떻든《우란분경》이나《목련경》은 大目連奪者의 효행을 담고 있는 점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우란분재 등 불가의 부모보은사상을 전파하는 데 고려 이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우란분재는 우리나라에서 왕실을 중심으로 고려 초기를 제외한 전시기에 걸쳐 행해졌던 것이다.

이어서 고려시대 승려들의 효행 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를 보면 그는 〈講盂蘭盆經發辭〉에서 "五刑이 三千이지만 불효만큼 大罪는 없고 六度에 돌아가는 것이 八萬이지만 효도만한 大福은 없다. 釋門의 5時와 儒典의 6經은 모두 대소를 휩싸고 존비를 일관하는 것이니, 비록 베푼가르침은 다르다 하더라도 효도를 숭상하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라고하였다.17) 여기에서 의천이 지니고 있던 불교적 효사상을 명백하게 찾아볼수 있다. 또한 의천은 〈蘭盆日燒臂發願疏〉에서 燒臂의 고통을 통한 지극한효도를 실천하여 온전한 효도의 성취를 서원하였으며,18) 이러한 효심은 또한그가 송나라 체류 중 부왕 문종의 영전에 바친〈祭文王文〉에도 잘 나타나 있다.19)

다음 普覺國師 一然의 경우는, 《삼국유사》에 효선편을 마련하여 불교적 효행과 함께 일반적인 효행까지도 아울러 편찬함으로써 효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또 그 자신이 지극한 효행의 실천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국사로서 충렬왕 9년에 이미 노령임에도 90대 노모의 侍養을 위하여 귀성하였으며 더욱이 아침 저녁으로 시양과 간병을 친히 다 하였다.20)

이 밖에 白雲 景閑和尚(1298~1374)의 효심, 無隱庵師 李氏의 효행 등을 열

<sup>16)</sup> 閔泳珪,〈月印釋譜第二十三殘卷〉(《東方學志》6, 1963).

<sup>17) 《</sup>大覺國師文集》 권 3.

<sup>18)《</sup>大覺國師文集》 권 15.

<sup>19) 《</sup>大覺國師文集》권 16.

<sup>20)〈</sup>義興麟角寺普覺國師靜照塔碑銘〉(《朝鮮金石總覽》上), 471~472쪽.

거할 수 있다. 이들 승려들은 직접 부모를 위해 추처하거나 또 현세적 효행 을 실천한 이들이다. 특히 無隱庵師 李氏는 侍養과 廬墓로써 3년상을 치를 만큼 유가적 효와 같은 효행의 실천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려시대 불교 적 효의 실천은 당시 유가로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더욱이 고려시대 에는 왕실을 매개로 불교와 유교가 이원적으로 병존하는 이념이었다. 따라서 유가로서는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배교는 불가능하였고 다만 효윤리에 있어 서라도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교적 지성 들도 불교의 내세적·신앙적 속성을 인식하고 교양으로서, 신앙으로서의 위 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유교와 불교는 피차 용납될 수 있었고 또 그러했던 것이다. 많은 유신들이 스스로 원찰을 가지고 있었고, 국사나 왕사 등 고승들의 탑비명을 썼으며, 많은 문사들은 문학 활동에서 불 교사원과 관계를 맺거나 승려들과의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 한 문학적 활동은 불교적 교양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다. 과연 고려시대의 문 화는 불교의 내세적인 면과 유교의 세속적인 면을 잘 조화시키고 있었던 것 이다. 물론 이것은 고려시대 유교 자체의 사상적 미숙성이라는 한계에서 연 유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

## (4) 5 례

고려사회는 성종 때부터 특히 유교사상을 정치이념으로 정비하는 데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국가이념을 확충해가는 과정에서 5례체제도적극적으로 갖추기 시작하였다.<sup>21)</sup> 그리하여 고려가 5례제도의 틀을 갖추게된 것은 예종 때로 잡고 있다. 이와 같은 5례제의 이론적 정비작업을 이룩한것이 崔允儀의 《古今詳定禮》이다.

《고려사》권 59, 예지의 서문에서는,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초창기라 예제를 정비할 겨를이 없었으나, 성종 때에 와서 圓丘·社稷·籍田·宗廟 등 祀典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종 때에는 예제를 관장할 관청을 설치하였으며, 의종대에 와서는 平章事 최윤의가 《상

<sup>21)</sup> 五禮에 관한 서술은 주로 李範稷,《韓國中世禮思想研究》(一潮閣, 1991), 46~47쪽에 의함.

정고금례》 50권을 편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종 때에 예제 정비작업이 전면적으로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중국 전래의 5례제가 충실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며 고려에 필요한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그 뒤 고려에서 유교사상을 이념화하는 가운데 유학 교육기관을 심화하고 확대하면서 아울러 예사상의 이론적 바탕을 축적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제의 실시로 인하여 그 시험과목에 또 禮書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고려에서도 전면적으로 5례제를 수용하고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 교육기관의 교과 내용에는 국자감의 경우《周禮》《禮記》《儀禮》등 이른바 3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 私學의 중심이라 할 최충의 9재학 당의 교과목에도《예기》와《주례》가 편성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 뿐만 아니라 관학 부흥정책으로 추진된 예종의 7재 중에도《尚書》《周易》등 경전과 함께《주례》《예기》《의례》의 예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과거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명경업의 고시과목에《예기》가 필수였음은 물론 제술업에서도《禮經》이라 하여 예서가 또한 試取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禮業이라 하여《예기》《주례》《의례》의 3례서를 시험과목으로 한 관리 등용제도가 있었음이 주목된다. 명경업의 일부 과목을 부과한 이 3례업이 왜 별도로 설치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3례업이 3 례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고려 초기의 예제 정비과정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관료의 선발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고려사회에서 유교사상에 의해 정치이념을 정립하는 과정을 교육과 과거 등을 통하여 볼 때 중국의 5례제 수용을 위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지반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례란 吉·嘉·賓·軍·凶禮를 말한다. 《주례》에 의하면 귀신에 대한 제례와 상사, 군사, 외교 및 접객·경사 등의 의례를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규범화한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5례제가 등장한 것은 晋나라(265~420) 때였으며 이것이 제대로 정비된 것은 당나라에 이르러서였다. 고려에서 5례제를 수용하던 틀은 《주 례》를 바탕으로 하여 당·송의 예제를 모방하고, 한편으로는 고려사회의 현 실에 맞도록 적절히 변용한 것이었다. 특히 당의 예제에 있어서는 《開元禮》 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5례의 첫째는 吉禮로서, 天神・地神・人神에 대하여 왕이 국가를 대표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즉 祀天儀는 大祀로서 천명을 받은 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의례이며, 국가의 안녕을 비는 제전이다. 嘉禮는 왕실로부터 서민에 이 르는 광범한 사회계층을 포함하는 의례로서 역시 왕이 중심이 된다. 이는 冠 禮‧婚禮‧冊封禮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왕실 의례의 격조와 위엄을 특 별히 나타냄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賓禮는 국제간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범화한 제도이다. 이것은 국제외교에서 왕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간의 위상을 의례 규범에 나타내고, 대내적으로는 지방관과의 관계에서 왕의 권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軍禮는 국가를 유 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군사에 관한 의례로, 군주가 군사에 있어 절 대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는 점을 의례를 통해 상징하는 것이다. 凶禮는 국가의 재난·질병·사망 등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위로하기 위한 의례 이다.

이와 같이 5례의 대략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길례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 은 祭天禮이다. 조선은 제후국이란 명분 때문에 제천례를 圓丘壇에서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려는 천명사상에 의해 圓丘와 方澤 그리고 太廟 등의 제사에서 당제와 대등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당제국과 같은 위상을 드러내었 다. 천제인 상제와 함께 고려 태조가 배향되고, 태묘의 경우 중국의 천자에 준하는 특별한 의례로 보이는 玉冊이 사용되었으며 천자 7묘라는 규범에 따 라 太祖廟와 더불어 3昭 3穆으로 7묘제가 행해진 것 등에서도 당과 대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빈례의 경우에는 《주례》의 고전적 개념에서 변용되어 당나라와 같이 왕과 제후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관계로 설정하는 의례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에서 고려는 중국의 북방 제국과 비교적 대등 한 외교관계를 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려왕은 사신을 접견하는 의식 에서 주인을 상징하는 동편의 섬돌과 길을 사용하였으며, 신하로 상징되는 북향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군례의 경우에도 《주례》의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 대외적 질서 개념으로 바뀐 당의 군사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군례의 내용에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고 강조하려는 이론적 근거는 《예기》에서 원용하고 있다. 고려가 5례 의 범주에 군례를 편제하면서 유교의 기본사상을 깔고, 다시 고려사회의 현 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규범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례의 경우에는 왕실의 정치적 권위를 위한 가례의 틀을 충실하게 지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례》의 기본이념을 유지하면서 당·송의 예제도 모방하고, 한편으로는 고려사회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편한 것이다. 특히 《주례》의 飲食之禮·昏冠之禮·賓射之禮 등의 내용과 정신이 고려의 가례 항목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가례가 왕실 중심으로 실시된 것은 그것이 왕실 중심의 의례라는 점도 있겠으나, 고려시대에 유교사상이 아직 왕실 내지 지배층에 머물렀을 뿐 널리 민간에까지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高麗史》의 禮志 凶禮條는 國恤,陳慰儀, 祔太廟儀, 上國使祭奠贈賻弔慰儀, 先王諱辰眞殿酌獻儀, 上國喪, 隣國喪, 諸臣喪, 五服制度, 百官忌暇, 重刑奏對 儀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의례는 당의 《개원례》에 보이는 周禮的 요소 가운데 상례에 해당되는 것만을 확대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사》의 흉례에서는 荒禮·吊禮·濟禮·恤禮 등이 탈락되고 喪禮의 내용만이 수용되 어 있다.

고려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세움에 따라 자연히 중국의 유교 경전에 근거한 예제와 고려사회에 전승되어 온 전통적 요소를 융화하여 5례제를 정비운영하였다. 그러므로 유교 경전에서는 3례서의 하나인 《주례》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으며, 때로는 《예기》도 원용되었다. 그리고 《주례》가 지니는 역사적 한계 때문에 당제나 때로는 송의 예제까지도 원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사실은 다른 정치·사회제도에서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먼저《고려사》오행지와 중국의《후한서》오행지 등을 분석·대 비하여, 고려시대에 중국적 五行思想이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하여 자연현상을 5행의 질서에 의해 분류하고 또 크게 咎徵과 瑞祥으로 양분하여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서상은 군주가 천명에 따른 이상적인 도덕정치를 이룬 연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곧 음양이 조화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구징은 災異로서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군주의 부덕한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것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고려사회에 수용되었던 月令思想은《예기》월령편에 근거한 것으로, 군주가 월령에 따른 정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재이를 초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양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군주의 責己 修德과 함께 월령에 의한 정사의 실천이 요청된다.

天文思想에도 중국 사상이 수용되었다. 무릇 천문상의 천재는 군주의 부덕 의 소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치자에 대한 천견으로 인식하 고 修省과 德治를 실천하여야 한다. 군주는 늘 지상의 자연현상을 통해 5행 적 질서에 따른 천의를 살피는 동시에 또한 천문을 통해 천의 의지를 파악 하여 천명에 순응하여야 한다. 일식이나 월식ㆍ성변 등 日月星變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은 역대 중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자의 부덕에 대한 하늘의 견책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천변은 음양의 부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군 주에 의한 責己修德과 덕치의 구현을 통해 消災하여야만 하였다. 이것은 조 화되지 못한 음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이를 군주의 행위로서 조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재이를 당한 군주는 이러한 천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기수덕하고 선정을 베풀어 천의에 보답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가져오게 하고 아울러 재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주의 정치행위는 음양을 통하여 자연현상 전반에 작용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하늘에 대하여 군주가 음양을 조화시키고 자연현상을 순조롭게 하며 상서를 나타나게 한다고 함으 로써, 왕권에 적극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는 하늘과 인간 일반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에 대해 초월적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현실적 왕권은 그 자체로서 인민에 초월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인민을 통치하고 교화하는 군주로서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유교적 정치이념이 군주의 위치를 초월화·절대화함으로써 현실의 전제국가체제를 이론화한 것

이라 하겠다.

다음에 유교의 실천유리에서 그 핵심을 이루는 효사상은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부모와 자식 사이 의 애정과 자식이 부모에게 갚는 孝情은 우리나라 고대의 조상숭배 신앙에 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잠재적인 신념이 유교의 전래와 더불어 서로 접합되어 전통적 유리규범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들어 와서 유교는 신라 이후 사상적 성장과정을 거쳐 새 시대의 정치이념으로 자 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 심층적 바탕 에는 효사상이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효경》이 신라 이래 가장 중요한 유리 서로서, 위로는 군주로부터 지배층에게 필수화되고 나아가서 민간에까지 널 리 보급되어 갔다. 따라서 《효경》은 국자감 학식이나 과거의 바탕이 되었으 며,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관리의 각종 휴가제가 정비되고, 부모를 위한 복 수의 허용. 割股. 廬墓 등 극단의 행위가 효를 위해 허용되었다. 또한 효행자 는 국가로부터 최대의 포상을 받고, 심지어 효자에게는 때로 천인신분을 양 인으로 상승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당의 10악률을 수용하 여 불효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불가에 있어서도 효행을 실천하고 유교 경전의 6경과 불가의 5時가 근원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고 할 만큼 효를 매개로 상호 융통성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유교사상을 국가이념 으로 삼은 고려사회는 효를 포함한 5륜질서를 예와 법으로 규범화하기에 이 르게 되었으며, 또 그 실천적 열매로서 효우·열녀전 등의 기록을 남기게 되 었다.

이와 같이 효의 윤리를 국가의 새로운 질서로 정립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효경》三才章 7에 잘 나타나 있다. 곧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효가 천지의 도 즉 天道·地道이며 민의 行 곧 人道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와 천도가 연속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다시 일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효경》聖治章을 보면 군주는 그 父祖를 上帝・天에 배향하는 것을 최대의 효라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神의 최고 권위인 동시에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천자의 특권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군주가 부조를 상제·천에 배향하는 것은 상제와 천이 군주의 부조

로 의제화되는 동시에 군주는 천·상제의 자·손에 擬定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효경》에 의하면 군주는 명실상부한 천자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人道에 있어 최고 권위인 왕은, 천과 상제로서 인도를 넘어선 神道·天道의 최고 권위의 자손에 의정된다. 그러므로 《효경》에 의하면 군주는 천과 천도에 이어진 천자로서 초인간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5례제를 수용하여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체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吉禮에서의 祭天禮이다. 圓丘와 方澤, 그리고 태묘 등의 제사에서 당제와 대등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당제국과 대등한 위상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천제인 상제와 더불어 고려의 태조가 배향되었었다. 태조의 경우 중국의 천자에 준하는 특별한 의례로 보이는 옥책이 사용된 것이나, 天子7廟의 규범에 따라 太祖廟와 더불어 3昭 3穆으로 7묘제가 행해진 것도 당과 대등한 고려의 위상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고려가 5례를 정립함으로써 국가의 독자성을 드러내려고 한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태조를 상제에 배향함으로써 《효경》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상제와천이 곧 고려왕의 부조로서 의제화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동시에 고려왕은 《효경》에서 볼 수 있듯이 천과 천도에 이어진 천자로서 초인간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李熙德〉